

2005年 8月

博士學位論文

産業安全保健會計制度의
定立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林 正 鏞

産業安全保健會計制度의
定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5年 8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林 正 鏞

産業安全保健會計制度의
定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指導教授 金基平

이 論文을 經營學博士 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林 正 鏞

林正鏞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審査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審査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審査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審査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2005年 4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4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연구의 배경	6
제1절 산업재해의 이론적 고찰	6
1. 도미노이론과 재해진화이론.....	6
2. 기타이론	6
제2절 산업재해 예방이론	14
1. 산업안전보건관리 이론	14
2. 관리감독자 제도	22
제3절 산업재해의 결정요인	27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재해	27
2. 삶의 질과 산업재해.....	39
3. 이해조정자로서 정부역할과 산업재해	52

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81
제1절 변수정의 및 연구모형	81
1. 독립변수 및 측정항목	81
2. 종속변수 및 측정항목	84
3. 연구모형.....	89
제2절 가설의 설정	90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90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90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91
제3절 자료의 수집	92
1. 설문지 구성	92
2. 표본추출방법	92
3. 자료분석방법	93
제4장 연구결과의 해석	94
제1절 표본의 구성	94
제2절 측정항목의 통계 분석	95
1.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분석	95
2. 회귀분석	100
제3절 가설검증 및 논의	102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관심도에 대한 효과	102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효과	106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시행에 대한 효과	110

제5장 결론	11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14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19
참고문헌	121
[설문지]	126

표 목 차

[표 1] 산업재해 정책의 종류	63
[표 2] 독립변수 및 측정항목	83
[표 3] 종속변수 및 측정항목	88
[표 4] 독립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분석결과	98
[표 5] 종속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분석결과	99
[표 6]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표	101
[표 7] 산업안전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효과 가설검증 결과	102
[표 8]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효과 가설검증 결과	106
[표 9]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효과 가설검증 결과	110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델	89
-------------------	----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y Lim Jeong-Yong

Advisor : Prof. Kim Ki-Pyung,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empirically the volition of introduction and effect after introduction for the thesis of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to measure and record industrial accident cost connected with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 in industry spot.

This study performs parallel theory study and supporting research simultaneousl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effectively. This study researches the literature us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bout calamity theory, prevention of calamity and compensation theory of it in theory study and designed study pattern for hypothesis testing in supporting research. This study makes some questionnaire a

nd draws up the questionnaire and then carries out together post, E-mail and examination after visit to each corporation and relevant person. Target of questionnaire is 150 building companies that have head office in Seoul and In-chon area.

This analysis was consisted of as follows;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method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 2 examined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decision factor in industrial accidents by background of this study. This study designed study pattern based on connection study of existent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 activity and measurement model to test empirically the volition of introduction and effect after introduction for the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in Chapter 3. Also, This study defined variable and collected data. Sample was composed, Collected sample data presents statistics amount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and analyzed consequence in Chapter 4. This study summarized conclusion of this analysis and present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hereafter direction of study in Chapter 5.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extracts the factors as follows among the expected effect conclusion reasons of various studies to test the volition of introduction and effect after introduction for the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For this analysis, The factors that the volition of introduction for the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are (1) Interest about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2) Professionalism of the manage

r of industry safety, (3) The performance of the specific method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This study established 3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chose 4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performance after introduction on the basis of the BSC result. It is (1) financial result, (2) customer result, (3) internal process result, (4) learning and growth result.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 testing with Interest degree about the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was rejected appearing that all interrelations do not exist with financial result, customer result and internal process result but interrelation was verified and accepted uniquely with learning and growth result.

Second, Hypothesis testing with the professionalism of the manager of industry safety and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was rejected appearing that all interrelations do not exist with financial result, customer result, internal process result and learning and growth result.

Third, Hypothesis testi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 specific method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was accepted appearing that all interrelations are with financial result, customer result and internal process result but was rejected because there is no interrelation with learning and growth result.

The Limitations of the analysis and hereafter research task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to be performed the research that consider the knowledge

e about the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and enough comprehension degree.

Second, it has to be performed very specifically the general special quality factor of response enterprise, volition of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enterprise performance.

Third, it has to be performed the introduction volition of introduction of safety health accounting system by industrial classification or industry, enterprise's scale and additional analysis in enterprise results.

Forth, it will need theoretical data for the definite division in Environmental Accounting or industrial accident, safety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own research model in industry safety health accounting field.

Fifth, it has to be performed the research on the basis of financial and measured index except the method of examination through questionnaire.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서 최선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에 쉽지 않다. 우리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할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보다는 기업과 인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도출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해보자. 우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이익창출이 기업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기업 행위에 관한 이러한 고전적 견해를 보면 기업 행위는 완전 경쟁을 지지하면서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 독특한 행위이며 기업의 목적함수는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이라는 것이다. 즉 기업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면서 그 기업에 출자한 주주들을 위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개인이 직접 사회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것 보다는 기업이 보다 많이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다. 즉 기업의 가치창출 과정이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문제를 모두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공해의 발생과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러한 환경오염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나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세력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적절한 교육제도, 고질적인 실업, 자연자원의 파괴, 불량주택 문제, 불충분하고 비효과적인 공공시설, 기회의 불평등 문제, 세대간 인종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의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기대에 부응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원래 기업 활동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방식(economizing mode)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방식(sociologizing mode)이다. 경제적 방식은 여러 경쟁적인 용도에 희소한 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공학기사와 경제인이 협동작업을 하는 과정에 나타났으며, 기본목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 기계의 설계 및 활용에 공학지식이 이용되고 인간과 기계의 배합에는 노동력의 합리적 분업화, 기능의 전문화, 생산함수의 이용, 수송에 있어서 최적 일정계획의 수립 등 경제학의 지식이 이용된다. 경제적 방식, 즉 경제화라는 용어는 극대화, 최적화, 최소비용 등의 의미인데 한마디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화 방식은 모든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모든 비용과 효익은 개인을 기준으로 인식되고 측정 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방식도 합리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경제화 방식이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사회화 방식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접근이나 사회적 접근이냐로 나누어 거론하는 이유는 사회라는 용어 속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서 사회정의를 확립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화 방식과 사회화 방식 중 어느 방식을 가지고 오늘날의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그것은 개인의 철학이나 경제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마

도 경제적 접근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익창출이라면 그러한 기업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공재가 부족하고 부의 편차가 심하며 불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도 사회구성의 한 단위이므로 기업활동의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개선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잘 예방하거나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사회질서와 사회공요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개인이나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 위험이나 투기적 위험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물적 및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나 또는 이러한 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 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조절되지 않는 손실의 우연성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에 주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 기업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이익의 한계점을 높임으로써 기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관리의 목적이며 이러한 위험관리가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업재해원가를 측정, 기록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산업재해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생산계통 속에서 추진될 때 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라는 용어와 산업안전보건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란 작업환경이나 작업활동 등의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를 말하는데 노동장애라고도 한다. 현대기업의 생산체계는 복잡한 기계의 조작과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생산체계에 잠재하여 있는 위험을 조사 분석하여 그것을 정보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연구에서는 재해이론과 재해의 예방 그리고 재해의 보상이론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실증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에 대한 제도가 기업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반영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기업체와 해당자에게 우편과 E-mail, 방문조사를 함께 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인 지역에 본사를 둔

150개의 건설업체의 최고경영자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건설업체의 범위는 정규직 30명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으로서 산업재해의 이론적 고찰과 산업재해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설정과 측정치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회계활동의 관련연구와 성과측정모형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변수를 정의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4장에서는 표본을 구성하고 수집된 표본자료에 대한 측정항목별 통계분석을 통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산업재해의 이론적 고찰

기계문명이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라고 할 만큼 인간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재해는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론과 범위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¹⁾ 또한 그 개념도 사고나 사건 등과 혼동하기가 쉽고 각국마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 그 발생이론을 고찰하여 그 개념을 정립 하고자 한다.

원래 재해의 발생에 관한 이론에는 도미노 이론(domino's theory), 휴먼 에러 모델(human error model), 사고/사건 모델(accident/incident model), 역학 모델(epidemiological model), 시스템 모델(system model) 및 복합 원인 이론(multiple causation theory) 등이 있다.²⁾

1. 도미노 이론과 재해 진화 이론

도미노 이론은 5가지의 요인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사고상해를 야기한다는 이론으로서 Heinrich모델 에서부터 시작되어 Bird모델, Adams모델, Weaver 모델, Zabetakis모델로 이어지고 있다.³⁾

1) 강수현, “안전관리 요인과 효율성”,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48-52.

2) D. A. Colling,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nd Technlolog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90, pp.27~35.

H. W. Heinrich and Dan Retersen, Nestor Roos, *op.cit.*, pp.20~32.

1) Heinrich 의 도미노 이론

Heinrich에 의하면 상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연쇄반응에 의하여 발생된다.⁴⁾

- (1) 유전적 요소 및 사회적 환경(ancestry and social environment)
- (2) 인간의 결함(fault of person)
- (3) 불안정한 행동 또는 불안정한 상태(unsafe act or unsafe condition)
- (4) 사고(incident)
- (5) 상해(injury)

이와 같은 5가지 요소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미노 연쇄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소인 불안정한 행동 또는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간의 결함은 대부분 단기간 내에는 개선이 어려운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고 직전에 있는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그것은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 개의 도미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전에 제거 해버리면 연쇄성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사고 전에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2) Bird의 도미노 이론

Bird에 의해 발표된 최신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사고 상해가 발생된다는 것이다.⁵⁾

3) Pertersen, D., *op.cit.*, pp.13~15.

4) H. W. Heinrich, *op.cit.*, pp.14~16.

5) F. E. Bird Jr. and G. Robert Loftus, *Loss Control Management*, Institute Press, Advision of International Loss Control Institue, 1989, pp.39~48.

- (1) 통제의 결여 - 관리(lack of control - management)
- (2) 기본원인 - 기원(basic causes - origins)
- (3) 직접원인 - 징후 (immediate causes - symptoms)
- (4) 사고 - 접촉(incident - contact)
- (5) 상해 - 손해 - 손실(injury - damage - loss)

즉 안전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기본원인(기원)이 야기되고 기본원인은 직접 원인(징후)으로 연계되어 드디어 사고(접촉)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고의 결과로 인신 상해 및 물적손해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제어 즉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 제2단계 요인인 기본원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사고가 근원적으로 예방된다는 것이다.

3) Adams의 도미노 이론

Adams는 Bird의 도미노 이론과 비슷한 사고 연쇄이론을 발표 했는데⁶⁾ 그는 Bird의 이론에 관리결여의 생각을 도입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고는 관리 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 또는 손해의 다섯 가지 요인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발생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전술적 에러(tactical error)와 작전적 에러(operational error)의 개념을 도입한데 있다. 사고의 직접원인을 관리시스템 내의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의 특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전술적 에러라고 개칭 하였다. 본래 그것은 근로자의 행동 및 작업상태 속의 에러이다. 이 관리 이론의 중요한 공헌은 전술적 에러의 기초가 되는 원인의 재 정의에 있다. 종업원의 행동이나 작업상태 속의 전술적 에러는 관리자나 감독자에 의해 만들어진 작전적 에러로부터 야기 된다. 그리고 이 작전적 에러는 관리구조 즉 조직의 목표

6) D. Petersen, Human-Error Reduction and Safety Management, Aloray Publisher Inc., 1984, pp.9~11.

조직화 방법 및 조직의 운영방법에 의해 야기된다.

4) Weaver의 도미노 이론

Weaver, D. A.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작전적 에러와 징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⁷⁾ 사고와 상해를 초래하는 전술적 에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징후일 뿐이다. 사고 및 상해가 곧 그러한 징후이다. 사고원인과 시정방법을 찾기 위해 두가지의 개념을 결합한다. 그 결합은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해 모두 작전적 에러의 징후라는 원리를 만든다.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행동, 잘못된 장비, 결합이 있는 기계의 배치 등 사고의 원인이 된 요인 뒤에는 정책, 조직구조, 의사결정, 평가, 관리, 행정 등의 작전적 에러가 있다.

안전기술의 활용 및 시정조치의 이행은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달성된다. 즉 “어떤 것이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인가?”를 묻고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왜 불안정한 행동이나 상태가 허용되었는지” “관리감독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작전적 에러를 명백하게 한다.⁸⁾

5) Zabetakis의 도미노 이론

이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원인은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불안정한 행동 또는 불안정한 상태, 물질 에너지의 예기치 못한 이탈, 사고, 구호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 된다는 것이다.⁹⁾

이 이론에서는 직접원인으로 「에너지 및 위험한 물질의 예기치 못한 이탈」

7) H. W. Heinrich, Dan Petersen, Nestor Roo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청문각, 1990, pp.17~19.

8) D. A Weaver의 이론적 특징은 what-why-whether process를 통해 작전적 에러를 명백하게 한다는 점이다(D. Petersen, Human-Error Reducation and Safety Management, Aloray Publisher Inc., 1984, pp.7~8.)

9) 이근희,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생산성 본부, 1989, pp. 19~22.

이라는 생각을 도입하고 있다. 재해가 에너지의 예기치 않은 이동 또는 해방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 이론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과이론 중의 하나로 공인받고 있다.

M. Zabetakis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고는 실제로 과도한 양의 에너지 즉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열적, 전리 방사선 등의 에너지 또는 위험한 물질 즉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에탄올, 메탄올 등의 예기치 못한 이탈이 직접원인이 되어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이탈은 불안전행동 또는 불안전상태에 의해서 생긴다. 즉 불안전 행동이나 불안정 상태는 사고의 간접원인이 되는 셈이며 사고의 근본원인은 안전정책의 결정이나 개인적 요소 그리고 환경적 요소 등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 기타 이론

1) 휴먼에러 모델

사고의 88%가 불안전한 행동(unsafe act)에 의해 발생된다는 Heinrich의 연구 결과가 옳다면 불안전한 행동의 기초인 휴먼에러(human error)가 사고원인 모델(accident causation model)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휴먼에러 모델(human error model)이라고 한다. Ferrel의 인간요소 모델(human factors model)은 이러한 모델의 하나이다. Ferrel에 의하면 사고는 사고유발 요인(initiating incidents)의 인과연쇄의 결과이며 휴먼에러는 모두 사고유발 요인에 의해 야기된다. Ferrel이 제안한 휴먼에러의 세 가지 상황은 아래와 같다.¹⁰⁾

- (1) 과부하(overload)-부하와 인간 능력 사이의 부조화(mismatch).
- (2) 인간의 상황에 대처하는 부정확한 응답
- (3) 부적절한 활동

10) D. A. Colling, *op.cit*, p.31.

2) 사고/인시던트 모델

Petersen은 Heinrich의 연구에서 모든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휴먼에러는 물론이고 모든 시스템 고장(system failure)을 포함하는 Ferrel Model을 채용했다. Petersen은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사고/인시던트¹¹⁾ 원인 모델(accident / incident causation model)이라고 불렀다. 이 모델은 휴먼에러(human error)를 과부하(overload), 인간공학적 함정(er-go-nom-ic traps),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the decision to error)의 세 가지 범주로 대별 하였다.¹²⁾

Petersen 이론의 주요한 공헌은 작업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게끔 결정하는 잘못된 의사결정(decision to error)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3) 역학적 모델

역학(epidemiology)은 질병과 특수한 환경요인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는 사고와 그 결과를 역학의 주제로 생각할 수 있다. 단순한 역학적인 연구의 사례로서 작업자의 보상과 보험률을 정하는 보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고와 상해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들 수 있다.

사고원인의 역학적 모델(epidemiological model)은 Suchman에 의해 제안되고 Surry에 의해 발전 되었다. 이 모델에서 작업자의 감수성과 지각 및 환경적 요소 들을 포함하는 소질과 특성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고 회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고는 사람(host) 통상적으로 기계(agent)와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비의도적 행동을 말한다.¹³⁾

11) "An incident is an undesired event that coul(t or does) result in loss." This definition could also be expressed as an undesired event that could(or does) downgrade the efficiency of the business operation(F. E. Bird Jr. and G. Loftus Robert, *op.cit.*, p.29.)

12) D. Petersen, *op.cit.*, pp.13~25, D. A. Colling, *op.cit.*, p.32.

13) D. A. Colling, *ibid.*, p.33.

4) 시스템 모델

Firenze가 창안한 시스템 모델(system model)은 위험보유의사결정모델(risk taking, decision making model)로 불리고 있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양호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의사결정의 기초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정보가 정확 할수록 의사결정이 좋아지며 결국 위험을 더욱 많이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정보를 가질수록 그리고 측정이 가능 할수록 risk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Firenze는 양호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¹⁴⁾

- (1) 작업의 요구조건
- (2) 작업자의 능력과 작업에 대한 그의 한계
- (3) 과업을 시도하여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 (4) 과업을 시도하여 실패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
- (5) 과업을 전혀 시도하지 않을 때 잃는 것은 무엇인가?

새 과업에 대해 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고 무엇이 hazard이며 hazard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충분히 작업자에게 훈련 시켰을 때 그 과업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과업이 성공적으로 달성 되었을 때 시스템의 피드백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5) 복합원인 이론

모든 사고 뒤에는 많은 인자와 원인 및 부원인 등이 관계되어 있다. 복합원인 이론(multiple causation theory)은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무작위 형태로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하나의 행동이나 상태

14) D. A. Colling, *ibid.*, pp.33~34.

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합원인 이론을 도미노 이론과 비교하여 해석해 보자.¹⁵⁾ 어떤 작업자가 사다리를 오르다가 추락 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하자. 먼저 도미노 이론에 의하여 사고를 조사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불안정한 행동 : 결함이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는 행동
- (2) 불안정한 상태 : 결함이 있는 사다리
- (3) 안전조치 : 결함이 있는 사다리의 철거

다음으로 복합원인 이론에 의해 사고조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고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 (1) 왜 일상 점검 시에는 결함 있는 사다리가 발견되지 않았는가?
- (2) 왜 감독자는 그 사다리의 사용을 허용했는가?
- (3) 피해자는 그 사다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 (4) 그 근로자는 적절하게 훈련되어 있었는가?
- (5) 그 근로자는 주의하지 않았는가?
- (6) 감독자는 작업 전에 점검을 실시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안전 대책으로 이어진다.

- (1) 개선된 점검절차
- (2) 개선된 훈련
- (3) 책임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정의
- (4) 감독자에 의한 작업 전 계획

도미노 이론은 복합원인 이론에 비하여 재해의 근본원인을 발견하고 조치하

15) D. Petercen, *op.cit.*, pp.12~14.

H. W. Heinrich and Dan Petersen, and Nestor Roos, *op.cit.*, pp.36~37

는데 있어 매우 제약적이다.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는 사다리 같은 불안정한 상태만을 파악한다면 재해의 원인보다는 증상만을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 재해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련행위나 상태만을 다룬다면 증상적인 사실을 취급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행위나 상태는 원인(proximate cause)은 될 수 있으나 근인(root cause)은 될 수 없다.

산업재해의 개념이나 그 발생이론은 다양하다. 개념정립이 어렵고 발생이론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개념정립을 위해서 어느 하나의 이론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 하나 하나에 대한 특징과 장점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산업재해 예방이론

1.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이론

1) 안전관리 발달의 역사

안전의 역사는 구약성서의 신명기나 안전 담당관을 두었던 씨이저의 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안전에 대한 입법과 사법과정은 산업혁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¹⁶⁾ 경영의 역할이나 보험 산업은 안전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발달된 산업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증가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전협

16) 박해천, “생산관리적 제요인이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9~11.

회나 법률의 증가와 영향력도 못지않게 증대되고 있다¹⁷⁾.

산업혁명 초기에는 작업조건들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공장의 환경은 더욱 심했다. 공장은 판잣집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조명이나 환기 위생문제는 최악의 상태였으며 휴게실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작업자의 2/3정도는 아동과 부녀자였으며 하루 노동시간은 12~14시간이나 되었고 보호 장구 없이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망자와 신체불구자가 속출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법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으며 최소 노동연령을 정했고 선반의 기어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개선책도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작업조건 개선 시도는 오늘날의 조직화된 산업안전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러하였지만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는 치명적인 사고 일지라도 공장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당시의 입법자는 이런 사고를 사고자의 과실로 규정하는 관례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보상의 법률화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미국에서 고용주가 법률의 규정이 아닌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기계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해 준다거나 한 쪽 눈을 실명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실제로 법이 있어도 고용주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미국의 산업발전은 운송수단을 개선시키고 조명과 보온문제 등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적손실은 산업발전에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고용주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동자 또한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은 컸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공장 관리자가 공장 관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공장관리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노력의

17) H. W. Heincich, Dan Peterson & Nestor Roo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 McGraw-Hill Book Co., 1980. pp.227~229.

투자가 요구 되지만 누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 하겠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으며 안전조직 운동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조직화된 안전에 대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직은 사고방지에 드는 비용이나 실패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인적손실은 재화의 손실과 마찬가지로 조직 전체의 손실이다. 더불어 성공적인 조직의 안전을 위해서는 알맞은 투자액을 할당하면서 효과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사고방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법률적 간섭도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입법활동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작용이라 할 때 사법활동 역시 다른 측면에서 모두 안전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시간과 돈과 노력의 투입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안전에 대한 것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야 하며 안전에 대한 자극을 계속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전관리의 역사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극이 언제 생겼는가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는 누가 왜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의 의도적 배분, 선도산업의 육성, 안정된 노사관계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시장경제에 광범위 하게 개입하게 되었으며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진입 규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금융규제, 가격규제, 토지관련 규제가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환경규제,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산업안전과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

지고 민간부문의 힘이 강화되면서 시장기능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주도의 경제정책과 비능률적인 정부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사회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역사의 발전과정에 따라 규제 강화와 압력도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규제의 칼 즉 규제의 수단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수단은 학자에 따라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¹⁸⁾

먼저 Breyer는 규제수단을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율 규제, 역사적 기준에 의한 가격규제, 공익을 기준으로 하는 희소자원의 할당, 기준 설정에 의한 표준화 방식 그리고 개별심사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¹⁹⁾

이윤율 규제는 (1) 과당이익 금지 (2) 사회 전반적으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의 예방 (3) 비능률적 생산방식의 제거 (4) 행정적 편의 등의 이유로 사용되고 가격규제는 보통 과거의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등과 적정 할인율을 감안하여 최고 또는 최저 가격을 규정한다.

희소자원의 할당은 희소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려되는 최선의 응모자에게 할당 배분하는 방법이며 개별심사에 의한 규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각 식품별 약품별 차이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상품별로 심사기준을 정하여 부적격한 것을 케이스별로 골라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준설정에 의한 표준화방식은 산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작업장의 환경, 안전성 확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Breyer의 규제수단 설명은 역사적 사례에 따라 대별한 것으로 주요한 경제적 규제를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 수단들을 설명하고

18) 김종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53~55.

19) S. Breyer, *op.cit.*, pp.36-155.

있으나 모든 규제 수단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수단에 대한 또 다른 분류는 D. F. Spulber의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나누는 방법이다.²⁰⁾ Spulber는 직접적 상호작용과 간접적 상호작용 속에서 규제가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법의 제정이나 명령 그리고 규칙 등을 통한 공식적 방법에 의한 규제와 소위 말하는 로비활동에 의한 간접적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 규제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이나 면허제도, 명령이나 지시 그리고 처벌 제재 등의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정보의 수집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방법이 있다. 간접적인 규제는 포획 이론과도 연결된다. 즉 처음의 규제목적과는 달리 면허제도 진입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 들은 일단 규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접적인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규제수단은 대별하여 명령 지시적 방법과 시장 유인적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령 지시적 규제는 통제 지향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이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방법이다. 시장 유인적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의한 규제는 융통성 있고 신축적이며 간접적인 규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산업 안전보건 정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Breyer의 기준설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령 지시적 직접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안전보건법 이나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20) 자세한 내용은 Daniel F. Spulber, *Refutation and Markets* (The MIT Press, 1989), pp.79~99를 참고.

기업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력을 가진 규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 외에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으로 상해세의 부과 등 산재부담금의 부과와 정보의 제공에 의한 근로자의 작업장 선택기회 부여, 안전교육 등을 통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조세감면 등의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산업인력정책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사에게 기준을 제공하여 그 순응을 확보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3) 산업 안전수준의 결정

산업재해 문제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산업재해의 분석시각으로서 산업재해가 비용 편익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산업재해의 성격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개입의 정당성 및 역할을 고찰하여 산업재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여기서는 전자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기본적 성격은 직무위험이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된 규범적 측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 감소가 비용과 편익이라는 대체관계를 동시에 수반하므로 산업재해가 개인선택의 차원에서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²²⁾

21) 송기호, “산업재해의 경제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12~13.

22) Smith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비용 편익분석에 의한 산업안전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 산재감소의 목표가 주어졌을 경우 사회는 다른 사회적 목표와의 대체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위험감소기술은 생산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직종, 사업체, 산업에서 동일한 위험수준을 찾으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산재위험감소 논의에 있어서 생명은 금전과 교환될 수 없다는 견해가 가장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규범이 정치적 주장으로서의 힘은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의 감소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말한다. (smith 1976, p.25.)

이처럼 모든 직무위험은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최적안전의 개념이 도출 될 수 있다. 직무위험과 그 결과인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서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산업재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양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직무위험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바 직무위험의 이러한 성격은 산업안전을 자원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경제재로서 다룰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우리는 산업안전의 획득을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조화되는 적절한 산업안전 수준을 상정할 수 있다.

4) 보건기준제정의 특색

미국의 보건기준제정 절차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기준제정의 계기는 근로자 측이나 기업 등 이익집단이나 공익단체 의회 대통령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²⁴⁾ 우리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기술위원실의 자체계획에 따라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기준제정의 계기는 거의 없다. 단지 한정 장치나 보호구 제조업체들로부터의 기준에 대한 수정의 요구가 약간 있을 뿐이다. 산업 안전보건 규제정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비해 아직 산업 안전보건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으며 관련 집단들의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 및 공식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 기준안의 제정에 있어서 국내의 정보만으로는 미흡 하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기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23) 조탁, “산업안전보건 규제정책의 정부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170~171.

24) Shapiro and Mcgarity, *op.cit.* pp.15-18.

셋째, 최종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 기준안이 대폭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²⁵⁾ 우리의 경우도 총괄기준 제정 위원회에서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참여자들 간에 협상에 의해 수정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 제정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나 그것을 심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나 기업측 기타 관련 집단이 그들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어려운 일이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편익 효과 분석을 점차 시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 또한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으로 보아 완전한 비용효과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석에만 의거하여 기준을 제정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제정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어 공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 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가 그리고 기준이 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기준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기준이 근로자들을 같은 정도로 보호 해주는 다른 규제수단과 비교하여 비용·효과적인가 등이다.²⁶⁾

끝으로 노동부장관에 의한 최종기준의 확정 공포 전에 일정한 기간동안 관련 집단이나 참여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주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잡하고 시일을 오래 끌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태라고 생각된다.²⁷⁾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준제정의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25) Breyer, *op.cit.* p.99.

26)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Budget for Fiscal Year 1993, p.692.

2. 관리감독자 제도

1) 관리감독자 제도의 정의 및 변천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를 두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 안전보건법상에서 관리감독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생산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작업감독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가 재해예방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시 관리감독자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재해예방의 일선에서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 것이다.

관리감독자 제도는 안전보건 업무의 라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시공)의 관리감독자(부장→과장→대리→계장, 주임→직·조·반장)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생산라인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라인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관리감독자 제도의 운영을 산업 안전보건법 변천 과정에서 살펴보면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로 산업 안전보건법이 태동되어 법 제13조 제1항에 현

27) 1987년부터 입법 예고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안)제 26조에는 행정처분사전통과가 규정되어 있고 제34-제49조에는 의견제출 및 청문 공회의 실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김도창, 『일체행정법(상)』, 서울 : 박영사, 2000, pp.806-819.

28) 이승환,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2001, pp.8~10.

제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최초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한하여 안전업무를 담당할 안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889호(1982.8.9)의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제2항에서는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담당자의 자격으로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작업분야의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하며 다만 당해 작업분야에 관한 기술자격이 국가기술 자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여기서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현행의 관리감독자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문개정(1990.1.13 법률 제 422호)으로 제 14조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 신설 되면서부터 구체적인 언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산업 재해예방 실현은 어느 특정계층 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재해예방은 다각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선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관리감독자 제도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담당자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감독자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관리 감독자의 임무와 책임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륙법 계통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이고 법전이 필요 없는 판례 중심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률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39개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의 상급자급인 직·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작업별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의 안전담당자에 해당하는 작업주임 및 안전담당자를 법제화 하였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해·위험한 작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작업주임에게 안전보건업무를 법령상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관리감독자에게 일반적 직무를 부여하듯이 그 정도의 안전임무를 법령에 두고 있으며 업종별로 고용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담당자 선임 수를 달리하고 있다.²⁹⁾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 의미의 관리감독자 미션임에 대한 벌칙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화한 나라는 일본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벌칙의 제재를 동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에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서류나 지침에 관리감독자의 각 계층별 안전보건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태만으로 인해 관리감독에 속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법과 민사법에 의거 책임을 지게 한다. 먼저 형사법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지며 그 처벌의 강도는 미국이나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사법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 즉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모두에서

29) 이승환, 상계논문, pp.93~96.

근로계약의 체결, 즉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를 지게 되며 그가 채용한 관리자 및 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안전보건 책임은 산업 안전보건법이든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회사 사규든 간에 관리감독자에게 묻게 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임무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단지 이와 같은 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기법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및 일반시민 등 모든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제도는 형사법(형법)에서 다루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법(민법)에서 다룬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소위 대륙법 국가에서는 개별 행위자에 대한 임무나 책임에 대해서 형사법 및 민사법 이외에 산업 안전보건법규에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미국 영국 등 소위 불문법 국가에서는 판례로 형성 해오면서 필요한 부문에 한해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 안전보건법규상의 관리감독자의 안전임무와 책임은 다른 장을 통해서 나라별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형사법상과 민사법상의 안전책임이다.

관리감독자의 안전책임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범죄는 이른바 과실치사상죄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사상죄를 세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일본 형법 제211조, 우리 형법 제 268조)를 두고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별도로 두지 않고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 (독일 형법 제222조에 과실치사죄 제230조에 과실치상죄)로 규정하고 통상 과실치사상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형법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서 과실치사상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생명과 신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

이기 때문에 고의로 침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과실로 인해 침해한 경우에도 죄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에 들어와서 이 죄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유해, 위협의 증가 및 자동차를 위시한 교통기관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과실치사상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이 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업무의 구체적인 경우는 자동차, 총포 화약류 취급자, 건축 시공업자, 의료업자 및 의약품 취급업자, 안전보건 관계자와 같이 개별 법률에 정하든 회사 내의 사규에 의해 각 계층 담당자에게 부여하든 상관없이 그 결과가 치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비록 과실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즉 관리감독자는 해당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형사법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발생시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지리적 자연환경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형사법상 방사선물질 독극물 등의 위험물질을 포함한 무허가 물질의 유통금지 등 환경에 관한 죄를 별도로 제28장에 편성할 정도로 강하게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분야에서도 화재위험이 있는 기업체 및 시설 인화성액체 인화성기체 특히 폭발물을 제조, 생산 보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안전보건을 형사법에서 강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이나 통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 급부장소에 배치되고 사용자의 제공에 의한 설비 기계 기구 공정 및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포함된 사용자의 의무는 단지 임금지급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시설에서 생기는 유해·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등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안전배려의무라고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건강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 의무는 독일 민법 제618조에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 미국 영국에서는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승인되어 오다가 오늘날 선진국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와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관리자 및 감독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모두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고자 회사 내의 규정에서 임원 관리자에게 각각의 직책과 책임에 맞게 안전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다.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상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관리감독자 임무를 부여한 제도는 없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관리감독자 부문에서 직·반장급에게 해당하는 안전 담당자 또는 작업부임자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근로계약상 관리감독에게 자기 직책에 맞게 안전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재해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정부가 실시한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로써 여타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자본주의를 일찍부터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1800년대 말 또는 1900년대 초에 벌써 산재보험 제

도가 도입 되었다.³⁰⁾

산재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 하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졌다. 즉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자는 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 되어야만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사용자는 다음의 세 원칙 중 어느 한 원칙이라도 적용되는 경우 산재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평상적 위험부담의 원칙(*assumption of risk*)과 동료과실의 원칙(*fellow-worker rule*) 그리고 근로자 태만의 원칙(*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평상적 위험부담의 원칙이란 고용에 따른 일상적 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함을 말한다. 동료과실의 원칙이란 산재가 동료 작업인에 기인한 경우이다. 또 근로자 태만의 원칙이란 사용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태만으로 인해 산재에 의한 원인을 제공 하였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은 산재보상을 더디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근로자들은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큰 법정재판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

또한 사용자측도 많은 재판비용을 지불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들로써도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우회하여 근로자에게는 빠르고 확실하게 산재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해주고 사용자에게는 그 책임을 한정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재보상의 기준을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에 두고 있다. 즉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는가 또는 근로자 측에 있는가를 따지

30) 임웅석, “한국의 산재보험과 재해예방관리 및 대책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38~40.

지 않고 일정한 법적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무과실책임(liability-without-fault)의 원칙 하에 근로자에게 산재배상을 하여주고 있다.³¹⁾

Rejda(1984)는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갖는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 타협의 이론(social compromise theory)이라 불리는데 이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타협의 결과이다. 즉 산재보험으로 인해 근로자는 확실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편 재판을 통하여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는 한편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최소 사회비용의 이론(least social cost theory)이라 불린다.

산재보험은 그 보험적 성격 때문에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며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절차를 우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한다.

즉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산재보험 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tort system)보다 효율적인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위험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산재가 근로자의 태만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사용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경우 배상에 따른 비용은 생산비의 일부로서 생산물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실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이러한 이론들이 내포하는 요소들을 모두 조금씩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무과실책임 원칙의 도

31) 고영선 외, 전거서, 1994 .p55.

입 배경은 사회적 타협의 결과이며 이 원칙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 원칙의 논리적 근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위험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의 경로가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이행한 결과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이행은 산재보험 제도의 새로운 변신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해발생에 있어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있어야만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었지만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 이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이른바 결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³²⁾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도 근로계층의 근로사고 뿐 아니라 비근로사고와 비근로 계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산재보험제도가 초기의 사용자 보험적 성격에서 전 국민적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국에서는 산재보험이 국민보험 체계 안에 흡수되어 산재보험을 위한 별도의 각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배상해 주는 사용자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순수한 사용자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산재보험을 순수한 사용자보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반대로 전반적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산재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재해 배상에 있어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사회부조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32) 이것은 소득손실이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상 재해이든 업무 외 재해이든 동일하다는 점과 독립된 강제보험체제 하에서 흔히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산재제도는 이 두 개념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며 순수한 사용자 보험도 또는 순수한 사회부조 제도도 아닌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산재보험이 사용자 보험인가 아니면 사회부조 제도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일견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차이는 재정방식 및 효율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산재보험을 순수한 사용자 보험으로 인식할 경우 보험효율은 일반적인 보험원칙 즉 높은 위험을 가진 가입자 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낮은 위험을 가진 가입자에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효율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산재보험을 사회부조 제도의 하나로 인식할 경우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효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그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효율의 평준화 내지 단일화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부조함으로써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효율의 평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효율의 평준화는 현재기업간뿐 아니라 미래기업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현재기업에서 공정 효율 보다 낮은 효율을 부과함으로써 현재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미래기업의 부담을 크게 하거나 그 반대로 현재기업의 부담을 크게 하고 미래기업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효율의 평준화는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의 수평적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현재기업과 미래기업간의 수직적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율의 평준화는 보험재정적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일단 효율이 평준화된 후에는 약간의 전반적 효율 인상만으로도 재정 수입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산업분야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어 그 부담을 여타 부문으로 전가시킬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산업의 효율을 조금씩만 인상하더라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 보험의 원

칙에 충실하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 산업의 손실을 타부문으로 전가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효율의 평준화는 산업별 사업장별 효율을 매년 계산하고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분류와 효율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다. 그러나 순수한 사용자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해석한다면 효율의 평준화를 통한 수평적·수직적 소득 재분배는 불합리한 것이다. 먼저 무조건적 부의 이전은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특계정이다.

효율 평준화에 따른 무조건적 부의 이전이 갖는 두번째 문제점은 형평성의 문제점이다. 광업의 예를 들자면 효율을 평준화했을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업들만이 광업부문에 대하여 보조를 해주게 되므로 부담이 공평하지 못하다. 즉 광업부문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산재적용을 받는 산업뿐 아니라 산재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들도 광업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감에 입각하여 보조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산재적용을 받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만 국한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결국 효율의 평준화는 산재보험이 거의 모든 취업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할 때에만 그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사용자보험의 성격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효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의 평준화를 추구한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사용자들을 설득시킬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고 효율의 평준화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회부조제도라기 보다는 사용자보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70여개의 업종별로 효율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큰 사업장에는 개별실적 효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고유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반

영하는 요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간 위험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보험보다 사회부조제도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현재 산재보험의 재정방식이 순 부과방식이어서³³⁾ 현재기업의 부담을 미래기업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는 다른 단체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다. 실제로 단체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며 그 존재 이유도 사회를 위함에 있다. 물론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기업제도가 기업을 위해 좋은 제도라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그 제도의 정당화는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되어야 한다.³⁴⁾

위 인용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 일반 시민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한 시민이고, 둘째 기업도 시민으로서 훌륭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기업을 이와 같이 보는 견해가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치유하는데 기업가나 경영자들을 참여시키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지 않다. 소위 엄격한 해석주의자(strict constructionist)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익극대화만이 수용 가능한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둘러싼 논쟁으로 각각의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문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⁵⁾ 전통적으로 기업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화와 용역을

33) 이외의 보험재정 운영방식에는 당해연도 보험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보험급여를 고려하여 보험료의 기초로 삼는 충족식 부과방식과 미래의 5-6년 정도의 보험급여의 현재 가치만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정하는 수정부과 방식이 있다.

34) 박창길 외 2인 공역, 『사회경제회계』 서울 : 법문사, 1991, p.99.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존속·성장하고 아울러 사회복리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기업의 가치창출활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사회라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기업의 유지·존속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업자신의 유지·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회계는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효익과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측정·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은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사회에 알릴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회계가 단순히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수탁책임이행에 대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보고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아담스미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근본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밀튼 프리드만의 견해 역시 기업경영자의

35) 박창길 외 2인 공역, 상계서, p.3.

책임이 자기의 주주나 구성원의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기업인이 부담하는 단하나의 사회적 책임은 사기나 부정 없이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경쟁을 하고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원을 이용하고 여러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경영자는 사회의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 임명된 것도 아니며 기업이라는 것은 주주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근본주의 견해는 기업재무관리나 회계학 등의 대학교과서 등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과서에서는 경영자의 주요 목적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일반적으로 주주의 부의 극대화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 SWM)모형이라고 한다.

경영자가 기업의 역할을 확장시키게 되면 시장계약에 의해 정의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내지 못하여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법적인 면에서는 기업활동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경영자의 법적 책임이 기업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관에 의해서 비시장적인 활동을 고려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경영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경영자의 관리적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의 생명과 목적을 갖는 하나의 영구적 기관이다. 사회 환경적 견해는 대기업을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힘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자유주의 사회의 근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초적 파괴주의(fundamental subversive doctrine)이다. 만약 경영자나 기업가에게 주주를 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경영자나 기업가가 그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업정책에 의해 보다 증가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경제적.법적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도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현대의 기업은 정치,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종업원의 행복 등 전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 마디로 기업은 훌륭한 시민으로서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업이 새로운 기업가치와 윤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질서와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도록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이기적인 관점과 가치에 계속 매어 있어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기를 꺼려한다면 기업은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챔버린(Neil W. Chamberlain)은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만일 지배계급이 변화를 두려워하여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와 새롭게 변화된 사회가 피를 주장하는 공격적인 집단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새 질서는 사회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를 지배하는 공격적 새 집단에만 분리되어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는 그 특정집단이 생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명분상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합리화될 것이다.³⁶⁾

이와 같이 볼 때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업가치와 윤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새로운 기업가치와 윤리는 다양한 유형의(종교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구조(ethos)로 정의될 수 있다. 번달(W.Bernthal)의 제안에 따라 가치의 계층을 다음과 같이 형성화 할 수 있다.³⁷⁾

36) 박창길 외 2인 공역, 전개서, p.123.

37) 박창길 외 2인 공역, 상계서, p.124.

- (1) 인간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자유, 기회, 자아실현, 인간존엄, 존경 등 의 인간복지 개선이어야 한다.
- (2)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양질의 생활, 문화 문명, 질서, 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의 사회복지 개선이어야 한다.
- (3) 경제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자원의 배분, 재화와 영역의 생산과 분배, 경제적 생산, 양질의 제품생산 등의 소비자 복지증진이여야 한다.
- (4) 기업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이익, 생존, 대중이미지 등의 기업 소유자 복지증진이여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익극대화를 위한 활동만 하거나 자기기업에 이익이 될 정도로만 사회적 활동을 할 때 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관련규칙의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사회의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경영자가 다음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탐욕스러울 정도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기업의 활동의 기초인가 아니면 이익창출활동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신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기초인가?

2) 독점자본과 산업재해

생산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독점자본은 비독점자본 특히 중소자본을 자신의 축적과정과 재생산과정 속에 편입시켜 나간다.³⁸⁾ 역사적으로 보건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오면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주도로 불균등발전이 심화되면서

38) 김형기,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 예속독점자본주의하 임노동의 이론과 현상분석』, 서울 : 까치, 1988, pp.192~194.

한편으로는 확대 재생산구조가 정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사이에 지배·종속관계인 하청계열화가 심화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재생산과정을 통해 각 개별자본 지배하에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동과정들의 상호의존성은 결정적으로 심화된다.

재생산구조에서 각 개별자본간의 소재적 관계와 가치적 관계는 각각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특히 용역하청의 경우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의 노동과정이 갖는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독점자본의 기생성에 의한 잉여가치 재분배기구인 하청제가 존재하는 것³⁹⁾은 독점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영역에 직접투자 할 경우 이윤이 나지 않으며 경기변동의 부담을 하청기업에 이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보면 표준화 및 노동감독이 어려운 생산물 및 유해·위험 작업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하청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수준이 낮고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는 곳이 많아 이에 따라 나타나는 낮은 노동생산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보충된다. 하청기업은 대기업이 수행할 공정가운데서 위험하고 유해한 부분을 주로 하청 받는다. 하청노동자의 작업내용은 원청노동자와는 달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유해하다. 그것은 대기업이 산업재해의 발생이나 안전보호에 대한 투자부담으로 이윤율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을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방침을 세우는데 있다.⁴⁰⁾ 한편 하청기업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히 하게 된다.

요약하면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하청계열화로 독점자본에 종속된 하청기업의 산업재해는 낮은 기술수준 및 낮은 기계화, 안전보건

39) 이경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서울 : 창작사, 1986, p.195.

40) 박덕제, 조우현, 이원전, 전게서, pp.322~323.

시설 미비 속에서 원청기업으로 부터 이전되어 온 고열, 유해·위험 작업을 노동자가 수행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하청과 산업재해의 관계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 구조 하에서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2. 삶의 질과 산업재해

1) 삶의 질과 노동운동

자본주의 경제는 기계의 사용과 분업의 발전으로 현저한 물질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노동자층을 만들었으며 분배의 불평등, 실업, 불황 등 종전의 봉건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동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힘이 약해 불안정한 고용, 불충분한 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를 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반조합주의 태도가 강하고 권위적이며 사용자측이 우위적이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높은 산재율 등이 근로조건에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로 인해 조합운동의 이념은 자연적으로 정치적 조합주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노사관계를 적대적 대립관계로 보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복지실현은 어렵다고 보고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을 정치혁명 투쟁으로 잡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사관계를 이해대립으로 보지만 어느 정도 이해조정과 타협이 가능한 비적대적관계로 보고 근로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을 경제투쟁 즉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조건 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다.

단체교섭제도의 정착과 함께 경제적 조합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분배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노사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기업도 근로자들을 경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받아들이게 되어 새로운 노사관계 즉 국민적 조합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동운동은 모두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본의 잉여가치생산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노동자의 통제형태 특히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고 더욱더 악화 될 수도 있다. 즉 노동운동은 노동과정에서의 잉여가치의 생산조건과 노동통제형태, 일정범위 혹은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막고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노동자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의 매매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노동운동은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노동시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⁴¹⁾ 산업재해와 관련지어 파악되는 노동운동은 주로 작업조건개선을 통하여 노동력 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별노동자의 수준에서 보기로 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개별노동자가 노동과정의 변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이 갖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산업재해의 양상은 다를 것이다. 새로운 노동대상이 유해물질이면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며 노동수단에 안전장치가 미비되어 있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는 산업재해 발생의 빈도와 그 강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 내지 종속되어 있는 개별노동자가 혼자 힘으로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파악하였다 해도 유해·위험 작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개별노동자들의 힘을 결집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산업재해의 측면에서도 요청된다.

41) 김형기, 전게서, p.44.

노동조합이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비롯한 작업조건개선을 위한 활동을 일상화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때보다 산업재해는 적게 발생할 것이다. 노동운동이 작업조건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운동의 고양은 전반적으로 노동조건개선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서구의 경험 특히 앞으로 다루게 될 영국의 공장법 입법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의 발전은 자본과 국가로 하여금 그 운동을 자본주의 체제내화 하도록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진시키는 한편 그 입법 내용의 개선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 후 노동운동의 고양기에는 각국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어 산업재해가 감소했다.⁴²⁾ 또한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각국에서는 산업재해에 관련된 기관이 설립되며 국제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⁴³⁾ 프랑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험 금고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사용자대표보다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재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⁴⁴⁾

요약하면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고양은 노동자의식의 진전을 가져오고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장의 작업조건 개선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역으로 노동운동 저발전의 결과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철저하지 못하면 산업재해 발생과 그 강도는 예전과 다름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의 노동운동이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당시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이 어느 정도 억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그 특수성에 따라 노동운동의 산업재해에 대한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될

42) 동년 편집부 편, 『산업재해의 인식』, 서울 : 동년, 1985, p.9.

43) ILO,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역, 전게서, p.34.

44) 등본무, “노동재해의 역사 2-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노동과학연구소』, 48권 9호, 1972, p.538.

수 있으려면 근로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절한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의 노동이동이 충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노동의 이동성 (labor mobility)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은 비록 그 보상이 충분치 않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의 안전보험제도도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동성 문제와 적절한 보상수준의 관계의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보상이 충분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다 이동성이 충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동성이 가장 풍부한 소수의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과 같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같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성이 가장 많은 근로자들은 대개 젊고 고용된지 얼마 안되는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위험에 대한 태도가 덜 회피적이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가장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이는 위험수당을 평균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이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형태에 의해서만 보상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산업안전문제 수준이 적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소 또는 과잉공급 될지는 불명확하다.

한편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기업고유의 기술을 획득 선임권(seniority rights)등으로 인해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잘 훈련되고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의 이직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근로자들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동의 위협에 의해서도 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험이 많고 더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도 이동성

45) Smith, The OSHA, pp.30~34.

의 부족과 turnover cost 양자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근로자가 어떤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는 그 기업에 고용한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선임권등으로 인해 또 노동의 이동에 따르는 거래비용 때문에 기업은 수요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기업의 산업안전보호 투자 수준의 결정은 한계적 이동자(marginal worker)들의 선호에 입각하게 되면 이들은 더 젊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계적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안전보건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고⁴⁶⁾ 사회적 수준 이하의 안전보호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⁴⁷⁾ 또한 불완전노동의 상황하에서 직업의 안정성은 근로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노동의 이동은 제약받게 된다.⁴⁸⁾ 기업의 수요독점적 지위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노조의 역할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비노조 근로자와 위험수당에 차이가 있게 된다.⁴⁹⁾

첫째, 노조는 개별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근로자들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노조의 역사가 길수록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노조가 대표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이다. 노조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협

46) 부와 위험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Viscusi, Risk by Choice, pp.45~53. 부유해질수록 안전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개인, 주, 국가간의 비교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47) Viscusi, Employment Hazard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169~179.

48) Viscusi, "Rreforming OSHA Regulation of Workplace Risks," in L.W. Weiss and M.W. Klass(eds.) Regulat ory Regulatory REform: What Actually Happen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pp.244~245.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기업은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위험이 과소 생산됨을 분석한 것으로서 Viscusi, Employment Hazards (Cambri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169~179.

49) Viscusi, Rist by Choice, pp.54~55.

상에 임할 때 개별근로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진술한 바와 같이 한계적 근로자들에 비해 다른 근로자들은 나이가 더 많고 경험도 많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위험수당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비노조근로자들 보다 더 많은 위험수당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규제수준도 더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실제로 노조근로자들과 비노조근로자들간의 위험수당의 차이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⁵⁰⁾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은 기업주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이익집단 정치의 성격이 강한 규제정책이다.⁵¹⁾ 따라서 두 집단은 그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리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집단의 영향력이 더 강력한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여부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측은 보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원할 것이고 따라서 개입전략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는 규제전략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유인전략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규제전략의 보조적전략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게 된다. 유인전략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마치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더라도 돈만 내면 그 책임을 면

50) Craig A. Olsom. "An Analysis of Wage Differentials REceived by Workers on Dangerous Job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6 No.2 (1981); J. Paul Leigh, " Do Union Members REceive Compensating Wages for Accepting Employment in Hazardous Industries?" Social Science Quaterly 65 (1984); William T. Dickens, "Differences between Risk Premiums in Union and Nonunion Wages and the Caes for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 AER Papers and Proceeding, Vol. 76 No.2 (May 1984) ; Viscusi, Employment Hazards, chap.15: Thaler and Rosen, "The Value of SAvint a Life," In N. Terleckyz (ed.), Household Product ion and Consumptiom

51) 또한 소수기업가의 희생으로 다수근로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Wilson, op.cit.,

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해 등의 유인전략에 의하여 기업주들에게 산재나 직업병 감소를 위한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회사가 해고해 버리거나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⁵²⁾

기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는 경우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므로 그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안 될 경우 그 내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⁵³⁾ 즉 법률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새로운 입법을 반대하거나 입법이 되더라도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채택을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유규제방식을 강조하거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규제전략보다는 유인전략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만 재해세제도의 신설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반대하게 된다.⁵⁴⁾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장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요인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으로서 형평성(equity)의 문제가 있다. 시장체제는 효율성의 증대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분배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결과가 비록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평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문제 역시 시장의 결과를 공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보통

52) Mendeloff, *Regulating Safety*.

53)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움직임이 보이자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은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이미 기업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는 근로자들의 실수나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이 필요 없다고 반대하였다. Kelman. " OSHA."

54) Mendeloff, *op.cit.*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현상은 John Rawls가 지적한 대로 편리할지는 모르나 공평의 원칙(principle of equity and fairness)에는 위배되는 것이다.⁵⁵⁾ 더구나 위험을 알고서도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므로 효율성을 어느 정도 저해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⁵⁶⁾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사전적으로는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피해를 입을 확률은 거의 같으므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소수에 집중되므로 사후적으로는 불공평하게 된다.⁵⁷⁾ 사후적 형평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이 제거되거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시장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⁵⁸⁾

형평성은 노조가 조직된 기업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간에도 문제가 된다.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의 향상 또는 위험수당의 인상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 더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의 존재 또는 가입 여부에 따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간의

55)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56) Arthur M. Okun, *Equality and Efficiency*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Steven Kelman은 이를 가부장주의(paternalism)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Steven Kelman, "Regulation and Paternalism," *public Policy*, Vol. 29 No.2 (Spring 1981),

57) Pauly와 Willett는 사전적 형평성과 사후적 형평성을 구분하여 전자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을 경우를, 후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사후적 형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k V. Pauly and Thomas D. Willet, "Two Concepts of Equ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in Amacher. Tollison and Willet (eds). *The Economic Approach to Public Policy* (Inthaca Cornell Univerxity Press, 1976),

58) Settle and Weisbrod, *op.cit.*

위험도나 위험수당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적절한 개입전략을 선정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정부개입의 목표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규제정책의 목표와 마찬가지로⁵⁹⁾ 산업안전 보건 규제 정책의 목표 역시 효율과 형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⁶⁰⁾

- (1)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산재비용)
- (2)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산재방지비용)

산재비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자 기업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Heinrich 방식에 따라 직접비용과 4배로 계산하는 간접비용을 합한 것이다. 산재방지비용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기업의 순수비용과 정부의 규제행정비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정부가 어떤 개입전략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또 선택된 개입전략을 얼마나 강력히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사회복지와 산업재해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기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납세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근로자가 피해

59) Kenneth J Meier, Regulation.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60) Guido Calabresi, The Costs of Accid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를 입을 경우 주위의 친척 친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즉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의 형태로 피해 근로자의 친지에게는 정신적 고통의 형태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외부효과의 크기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재해손실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Heinrich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액을 직접손실로 보고 이의 4배를 간접손실로 보아 총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도 이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이중에서 외부성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나 직업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안전보건규제와 같이 사전 예방적인 정책이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⁶¹⁾ 사후보상정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보험 및 실업보험 등과 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발전된 것이다.⁶²⁾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사전에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후에 사회 보장적 목적에서 재해노동자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 및 치료 후의 노동력의 저하로 생긴 소득의 상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후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사고 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재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기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급여기준을 정함에 있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62) 김한주, 『한국사회보장론』, 제 2개정판, 서울 : 법문사, 1985, pp.156~160.

어서 기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경우에는 기업주와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간접적인 규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다.⁶³⁾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직업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부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신체는 투표권이거나 자유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거래에 맡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위험수당을 받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작업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⁶⁴⁾ 정부는 단지 경쟁시장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 및 신체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한 자원의 최적분배 또는 소비자주권이라는 경제적 가치기준보다는 도덕성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이나 모터사이클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안전규제는 단지 개개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⁶⁵⁾ 생명과 신체에 관한 문제를 비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거래에 맡겨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러한 규제의 기본전제이며 산재안전보험문제 역시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 미국 일본 등의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6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6, p.526.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재해나 직업병의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만 취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64) 최병선, 상계서, pp.510-511.

65) Greer,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pp.409-410.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평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중요한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형평성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상태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정의로운 상태인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로서 누구나 합의 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기준은 없다.⁶⁶⁾ 지금까지 제시된 형평성의 판단기준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정부가 산재안전보험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구분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취업기회의 차별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자본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등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생활수준 또는 소득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격차는 줄어들어야 하며 누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경우 이것이 보장 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사상이 그 배경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실상 사회의 채무자(*debiteur de la societe*)로 태어난다.⁶⁷⁾ 옛날에는 별로 제기된 바 없던 이 생각은 오늘날에는 명백한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사람

66)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장치에 관한 사회계약론에 관한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공리주의 세가지 접근 방법과 그 비판에 대해서는 John Arthur and William H. Shaw.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8). 참조, Greer는 이를 목적론과 비목적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Greer, *op.cit.*, pp.49-51.

67) 이승무, 전제논문, pp.180~183.

은 사회적기금, 타인에 의해 축적된 노동의 도움 없이는 음식을 섭취하지도, 도구를 다루지도, 입술을 열고 생각을 표현하지도 못한다. 그가 개인적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의 산출물에서 진정으로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계산은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진다.

사회적 가치의 등식은 성립하지만 사회적 채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교환적 정의는 여전히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 교환적 정의를 보다 완전한 형태로 달성하는 방법은 사회적 채무를 인정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기금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모두에게 열린 진정으로 상호적인 기관을 조직하는 데 동의하며 그 조직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들을 가능한 공동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무상으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초등교육의 단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적인 적성이 진정으로 이득을 보는 시점까지 제공되어야 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질병과 사고, 비자발적 실업, 노령 등 자연 혹은 문명이 모두에게 닥치는 위험으로부터 상호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에 의하여 각자가 사회에 진 채무에 비례하는 만큼 기여금을 낼 때 사회적 가치의 등식을 넘어서 교환의 정의에 다가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원인에 대한 각자의 빚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상계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는 공동의 제도들 전체에 대하여 자기 몫의 희생에 동의했고 모두에게 자신의 사회적 부담금(contribution)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이다.

Bourgeois는 이러한 제도를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보험제도로 이해한다. 노동을 하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임금을 버는 한 개인을 생각해 보자. 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에게 임금의 균일화를 보장할 수 없다. 이 균일 임금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회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우선 보장해야 할 최저의 생존과 생명 자체가 있다. 타인들이 과잉된

것을 누리는 옆에서 누군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옳다. 노령이나 장애에 의해서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을 보존하기가 신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불가능한 상태에 영구적으로 처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의 힘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잠정적으로 질병이나 산업재해 또는 비자발적 실업에 의해 잠정적으로 자금이 불가능해진 모든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부담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위험(risques sociaux)들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상호화(mutualisation)가 행해져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노동자나 고용주 중 어느 쪽이든 또는 양쪽 모두의 과실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피해보상의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민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어느 일방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산업사회의 근로조건의 특성상 근로자는 특정한 종류의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직무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에 대하여 고용주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1898년 법령의 특징인데 고용주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방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무상의 위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정된 피해액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보상해 주는 식으로 보험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보험체계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보험이 강제된 산업분야가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3. 이해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과 산업재해

1) 이해조정자의 역할

(1) 이해대립의 해결을 위한 규범론

위험한 노동의 수행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고용계약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의 가능성도 그

문제 중의 한가지이다.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의 확인과 그것을 해결할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면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 위험의 문제에서는 우선 사실의 확인이 쉽지 않다.⁶⁸⁾ 예를 들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고용주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지켰는지, 여기서 지켜야 할 기준은 어떤 근거에 따라 만들어지는지, 그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고용주에게 더 이상 잘못의 여지는 없는지 등등 계속 변화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생산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경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실의 확인 자체가 구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된다⁶⁹⁾.

그 다음으로 사실 자체의 확인에는 모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가 받아들이는 규범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존의 규범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할 규범이 존재하지만 그 규범이 서로 다른 철학에 따라 복수로 존재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범적 대립은 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불법행위 분야에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을 내세우는 입장⁷⁰⁾과 과실책임(negligence)의 원칙을 내세우는 입장⁷¹⁾이 대립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실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사고위험의 속성 때문에 규범적 대립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

68) 이승무, 상계논문, pp.147~149.

69) Carl F. Cranor, 1990, "Some Moral Issues in Risk Assessment", Ethics 101(October), 1993, *Regulating Toxic Substances : A Philosophy of Science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70) G. Fletcher, 1972, "Fairness and Utility in Tort Theory", Harvard Law Review 69.
R. A. Epstein, 1973, "A Theory of Strict Liability" , Journal of Legal Studies 2.

71) Richard A. Posner, 1972, *A Theory of Neglig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

각되기도 한다.

본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에 관련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대립을 해결할 규범을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려고 한다.⁷²⁾

교환적 정의는 교환계약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서 받을 교환물에 대해서 느끼는 필요사이에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교환적 정의란 고용계약 그 자체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 여기에는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분배적 정의는 각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몫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배적 정의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권리에 따라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정적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여 그 사람은 이익을 보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았을 때 침해한 자의 것을 침해당한 자에게 줌으로써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인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다.

(2) 정부규제의 목적

정부규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해답은 정부규제의 본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즉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와 소득 및 부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⁷³⁾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유지 또는 인간다운

72) 이러한 정의의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Nicomachean Ethice 제 5부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Martin Ostwald 1962,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Henry W. Spiegel, 1983,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p.31.

삶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장임금에 기초하여 임의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주의 재량권에 제한을 가하고 저임금이라도 일하려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치는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 동시에 흡연자에게는 기득권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정부규제는 사회 구성원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변화시킨다. 즉 새롭게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가 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이 있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이 있다. 정부규제가 국가의 강제력에 근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⁷⁴⁾

정부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정부규제의 채택 또는 기존 규제의 강화내지 철폐 및 완화에 따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는 그 목적에 따라 정부가 시장진입과 퇴출, 가격, 생산량, 제품과 서비스의 질 등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환경보호,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하여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규제의 이러한 분류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정부활동규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규제를 이처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분류법이지만 이것이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73) Alan B. Morrison and Roger G. Noll,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s in the Eighties : A Panel Repor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1980), p.7.

74) 김종배, *전계논문*, pp.11~13.

분류인지 아니면 규제의 대상영역 내지 활동을 기준으로 한 구별인지 항상 분명한 것이 아니다.⁷⁵⁾ 또한 독과점 규제나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키는 입장도 있고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와는 별개의 유형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⁷⁶⁾

그런가 하면 모든 규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양자의 구별을 부인하고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동일시하는 입장도 있다. 나아가 사회적 규제나 경제적 규제의 틀로 분류되기 어려운 제3의 유형에 속하는 규제도 있을수 있다.⁷⁷⁾ 릴리(William Lilley)와 밀러(James C. Miller)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모두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규제가 시장과 요금 및 지켜야 할 의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 판매되는 조건과 물리적 성격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봄으로써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기도 한다.⁷⁸⁾

75)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경영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3), p.14.

76) 경제적 규제는 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독과점금지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경쟁을 확보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7) 특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 그렇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규제 현실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진입제한, 행정지도, 투자조정, 조사 및 보고의무 등과 같이 정부의 정통적인 권위주의적 지위와 행정편의를 배경으로 하는 법외적·절차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바 이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어느 것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제3의 유형으로서 이를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김종석, 『한국정부규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김종석,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이규억 편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김종석, 『경제규제와 경쟁정책(II)』, 이규억 편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pp.398-400.

78) William Lilley and James C. Miller, "The New Social Regulation," Public Interest, No. 47.(Spring 1977), pp.53-54

①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이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크게 ①진입규제 ②가격규제 ③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모두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진입규제는 기존 기업과 그 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 사이의 경쟁을 제약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규제는 규제 대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의 정책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경제규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목적도 해당 시기의 특수한 장치, 경제적 상황속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규제의 개념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변수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무사하고 다양한 경제적 규제를 몇 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해 체계적으로 일관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규제의 개념이 목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규제 역시 다양한 정책목적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경제적 규제의 목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중복투자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산업발전의 저해와 품질 저하, 생산품의 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불안정 등 기업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소비자의 보호와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⁷⁹⁾ 먼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는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⁸⁰⁾와 부당이득의 방지⁸¹⁾ 그리고 부당한 가격 차별의 방지⁸²⁾를 위해서이다. 다음으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한 것⁸³⁾과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이다. 선진국에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규제가 바로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⁸⁴⁾ 라고 할 수 있다.

79) 최병선, 전계서, pp.33-39.

80)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의 시장에서 독과점적 산업의 존재는 항상 소비자 이익을 위협한다. 독과점적 사업자는 생산량을 제한하고 독점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저급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문제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과점 사업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1) 특정산업에 있어서는 공급이 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가 곧 초과이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산업에 있어서 생산자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아무런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최고 가격의 지정 등 가격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부당이득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유한한 천연자원의 개발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와 같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주택과 같이 공급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82)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격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런 가격차별이 가능한 것은 수요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차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규제는 가격수준 보다는 주로 가격구조 또는 요율구조를 규율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제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부당한 이유에서의 가격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취약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런 규제의 목적이다.

83) 공급의 탄력성이 극히 낮아 과잉시설의 문제를 안기 쉬운 산업은 경기 후퇴기에 기업들이 파괴적인 가격경쟁을 야기함으로써 동 산업내의 태반의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수요감퇴기의 파괴적인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84) 개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육성이 바람

②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의 차별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도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의 주요한 대상은 기업이라 할 수 있자만 개인이나 가정도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의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그것의 계속적인 강화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⁸⁵⁾ 이것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가와 쾌적한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직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자본시장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로서는 수입규제,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기업 수의 제한 또는 기술도입선의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85)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다급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와 작업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생산단계와 생산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소비자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대량생산, 생산기술의 복잡화, 유통단계의 복잡 다기능화 등 대량생산, 대량소비 산업사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소비자는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생산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지위에 처하게 되면서 소비자 문제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야기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규제는 필요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란 인간 생명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셋째, 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업 활동을 둘러싼 세력관계가 변화할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이 요청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교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가부장적 역할을 요구한다. 그것도 수동적이라기 보다는 능동적인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사후적이라기 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보다 중시하게 된다.

(3) 정부개입의 정당성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문제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산업재해정책은 산업재해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 여부와 산업재해정책의 성격에 따라 산업재해의 감소 및 노동자의 소득보장 등은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⁸⁶⁾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⁸⁷⁾

86) Mendeloff(1979), pp.7~15, Viscusi(1983), pp.76~83, Chelius(1977), pp.5~8.

87) 송기호, 전제논문, pp.15~18.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산업재해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둘째는 작업 안전기준의 설정과 그것에 대한 감독과 같은 법률적·제도적 수단 에 의하여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셋째 산재보험료 또는 산재세(injury tax)등 고용주에게 산업재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 즉 부과금제나 벌금제를 통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위험에 대한 불완전한 보상체계이다. 보상체계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동시장을 통한 사전적 보상과 산재발생 후 산업재해 보 상보험에서 주어지는 사후적 보상이다. 이러한 보상체계가 모두 완전하게 기능 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전적 보상의 경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1) 근로자의 직무 위험에 대한 완전정보 (2) 완 전노동 이동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따라서 보상적 임금격차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은 산업재해정책의 선택에 있 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후적 보상도 보험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 노동자들의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완전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정부는 산업 재해문제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여⁸⁸⁾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최 선의 직무위험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산재를 입은 노

88)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기준 중 가장 유용한 것은 효율성 기준 이다. 효율성 기준이란 ①여러 정책 중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②순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계획의 규모를 정책실행의 한계이득이 한계비용과 같아지 는 수준까지로 하며 ③정책의 편익한 단위당 부과되는 비용은 여타 정책의 그것 에 비하여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들을 말한다.(Viscusi[1983], pp.80-84).

동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산재를 발생시키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설치와 산재보험료 혹은 산재세와 같은 부과금제 또는 벌금제도⁸⁹⁾를 통해 산업재해의 감소를 추구한다.⁹⁰⁾

산업재해정책의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정책을 선택할 때에는 산재감소 가능여부 및 소득보장 여부 그리고 정책수행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liability) 및 정부개입의 방식 등의 관점에서 구분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정책내용, 산재감소의 달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 여부 등에 의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이는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노동력의 손실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업주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주의 적극적인 예방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책적 고려도 그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적 완전책임의 원칙은 피고용자에게 최적의 예장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89) Smith(1974) 참조. 산재세나 산재부과금과 같은 산업재해정책은 법률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산업안전규제정책과는 달리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산업안전투자의 증가를 기대한다.

90) Viscusi(1983), pp.84~92.

[표 1] 산업재해 정책의 종류

정책 종류	피고용자 완전책임	고용주 완전책임	공동 책임	잘못에 따른 책임분담	정부주도 안전규제	조세에 의한 소득보전
정책내용	피고용자 전비용 부담	고용주가 전비용 부담	고용주가 자동적으로 일부 비용부담		감독, 벌금 강제규제	노동력상실 피고용자 소득보전
산재감소 달성여부	고용주에게 최적 예방유인 제공못함	피고용자 에게 최적 예방유인 제공 못함	불확실	법적체계가 잘작동하면 모두에게 유인제공	불확실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예방유인 모두 왜곡
소득보장 달성여부	필수적인 소득보장 이 안됨	완전소득 보장	실질적 소득보장	책임자에게 의무적 소득 보장이 안됨	필수적인 소득보장이 안됨	완전소득보장
기타			현재의 보상체계와 기본적으로 동일	정책수행비용 높음. 비노동 재해에 적합 한 체계	광범위한 관료조직이 요구됨	정책수행비용 이 높음

자료 : Chelius(1977) p.43에서 인용

산업재해와 직업병문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사전예방 정책과 사후보상 정책의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사전예방 정책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하는 정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규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사후보상 정책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한 후에 피해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해 주고 소득을 유지해 주는 정책으로서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는 규제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데다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험제도 정책을 주로 다루고 다만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는 그 운용 방법에 따라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급될 것이다.

산업안전보험규제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률은 매우 많다.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회노동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36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31개, 산업안전 공동조사에 의하면 28개 내외로 되어 있다.⁹¹⁾

이렇게 많은 법률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과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 중의 하나에 불과 하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한 가장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며 다른 법률들은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거나 단편적인 몇 개의 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⁹²⁾

유인전략과 규제전략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개입수단 들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유인전략과 규제전략은 특정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기본철학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전략은 사회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도덕성과 선악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의해 사회적 유대와 상호신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법이란 바로 이런 사회적 도덕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

91)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법 개정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산업안전공단, 1989. 12, p.4.

92) 예를 들어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과 위해의자와 기업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므로 범법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선 과 악에 대한 감정과 도덕성을 깨우치게 하고 도덕성의 표현인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충족시킴으로써 법의 권위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보이론에 입각하고 있다.⁹³⁾

반면에 유인전략은 특정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사회구성원 전체로부터 의심의 여지없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시장체제 유지 뿐 이라는 것이다. 법은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이유는 도덕성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순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은 응보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행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 아니라 처벌로 인한 한계비용과 법준수의 한계편익이 같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⁹⁴⁾ 요컨대 법률이나 기타의 정부 정책은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응보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두 전략이 이와 같이 사회의 가치체계나 도덕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정이나 법의 본질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작용 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규제전략은 사람들이 원래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는 데다가 불응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요인전략은 순응하는 경우 혜택을 받도록 하여 대상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전략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단도 규제전략의 경우에는 벌금과 체형 및 제도를 사용하는데 반해 요인전략의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과 보조금 그리고 보험료의 할

93) Sedgwick, *ibid.*, pp.96~100.

94) Sedgwick, *op.cit.*, pp.91~96.

인 등 편익을 주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 각 전략하에서 대상집단의 재량의 여지도 차이가 나서 규제전략은 일정한 행동의 금지 또는 최소한의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집단은 순응하거나 불응하거나의 양자택일 밖에 할 수 없으나 요인전략은 대상집단의 순응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대상집단은 폭 넓은 재량의 여지를 가질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규제전략은 획일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요인전략은 대상집단이 각기 여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어 능률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처벌을 위주로 하는 규제전략은 정부의 개입전략으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져 왔으나 특히 미주주의의 확산에 따라 비강제적인 요인전략이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그 비능률성이 문제시 되면서 요인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⁹⁵⁾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주로 규제전략에만 의존하다가 점차 요인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양전략은 각기 기본철학이 다르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점점 더 규제전략은 축소되고 요인전략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규제전략은 일방적으로 단점만 부각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렇게 비규제적 유인전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⁹⁶⁾

첫째, 순응연구의 새로운 경향 특히 공리주의적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유인전략과 규제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밝혀지면서 유인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Friedman을 비롯한 정책분석의 합리적 의사규정모형의 발전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95) Max Neiman, "The Virtues of Heavy-Handedness in Government." in Brigham and Brown, *op.cit.*, p.20.

96) Max Neiman, *ibid.*, pp.21~23.

둘째, 규제전략은 대상집단의 회피와 혼돈을 유발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긍정적 비규제적 수단을 강조하는 Skinner류의 학습이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셋째,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정부활동의 규모와 범위가 성장해왔으며 그 성장의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의 증대로인한 것이었다는 비판 때문에 규제전략을 축소하고 유인전략에 더욱 의존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⁹⁷⁾

규제전략의 대안으로서 유인전략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Schultze를 들 수 있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집권화된 관료제에 의한 명령통제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유인구조를 수정하는 기술을 최대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⁹⁸⁾ 실제로 규제전략에 의해 수행되던 많은 활동들에 계속 유인전략이 도입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유인전략에의 지나친 의존을 비판하고 규제전략의 효율을 강조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법률이나 정책 등 여러 형태의 정부개입은 단지 대상집단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 선, 도덕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지 개인의 형태변화에 주는 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규제전략과 이에 기초한 처벌이 없는 경우 사람들의 도덕의식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마비시키고 신뢰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이러한 도덕이나 윤리는 경제적 거래에 의해서는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⁹⁹⁾

규제전략과 유인전략간의 이러한 대립은 특정한 문제의 도덕적 및 중요성과

97) Hart유인전략에의 의존원인을 첫째 처벌의 공포가 범죄행동의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라는 Bentham적 신뢰의 상실 둘째 응보이론이 사회적 조건으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향과 사회심리학에 의해 비판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된 것 등을 들고 있다.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Quoted from Brigham and Brown, *op.cit.*, p.13.

98) Schultze, *op.cit.*, pp.6~7.

99) Neiman, *op.cit.*, pp.30~33.

개입전략의 유형을 조화시킨 Handberg의 견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¹⁰⁰⁾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일정한 가치체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면 규제전략이 사용되어야 하며 유인전략은 도덕적 측면이 약한 법률일 수록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는 심리적 금지와 윤리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회의 중심적인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윤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 및 재생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동통제는 직접적으로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쳐 잉여가치 생산조건을 규정하게 된다. 국가는 법적 행정적 장치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저항과 노동운동을 억압함으로써 개별 자본의 노동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여 준다. 국가는 총자본과 개별자본 수준에서의 노동조건 특히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와 그에 따르는 노동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잉여가치 생산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즉 국가의 노동통제는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및 노동생산성 증대 등을 가져온다.

그런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및 노동생산성 증대는 산업재해의 유발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노동통제정책은 잉여가치 생산조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재해를 결정하는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제3세계국가로서 미·일 등의 제국주의적 규정성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치실현을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재생산구조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억제하여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기 위해 국가의 노동통제가 더욱 억압적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대외 예측적인 재생산구조하에서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통제가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조건을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시킴으로써 한국의 산업재해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100) Handberg, *op.cit.*, pp.103~112.

산업재해정책과 산업재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총자본으로서의 국가는 노동통제를 통하여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조건을 보증하여 주는 한편 노동자의 물질적 재생산조건을 개선하고 노사간 갈등의 완화와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산업재해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영국의 공장법은 표준노동시간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공장법의 입법배경과 과정 및 그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산업재해정책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갖는 국가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⁰¹⁾

공장법 입법 당시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제한 없는 노동시간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가 지배적 범주로 되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과다착취는 근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 보아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에서의 위협 및 과다착취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초공급화와 이에 따른 혁명의 위협이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장법은 자본의 착취권에 대한 간섭이지만 반자본적인 정책은 아니다. 공장법은 자본의 편협하고 단기적인 경제이익(현재의 과다착취)에 반함으로써 자본의 더 높은 차원의 장기적인 경제이익(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공급)과 자본의 궁극적 이익인 정치적 이익(혁명의 방지를 통한 자본주의적 질서의 유지와 그 재생산)을 살려주기 위한 총자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장법에 나타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이다.

공장법의 확대적용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총자본적이면서도 자본분파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법의 확대적용 배경에는 경쟁조건을 평등(곧 노동착취의 평등한 제한)을 요구하는 일부 자본가가 있다. 경쟁조건을 평등은 총자본적인 합의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 평등을 요구한 자본가는 공장법의 제한적인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특정 자본분파로 볼 수 있다. 유독 규제를 받고 있는 특정 자본분파로서의 대자본들이 국가에 압력을 넣

101)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서울 : 풀빛, 1999, pp.47~72.

어 공장법의 확대적용을 강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인 노동시간 연장을 규제한 공장법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공장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의 사후 보상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의 사후 보상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의 기회의 비용이 커지면서 산업재해의 예방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¹⁰²⁾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기적으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마련이라는 자본의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적용은 자본분과들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여 경쟁조건의 평등화를 위한 것이다. 산업재해정책은 대체로 대자본에서부터 적용되어 소자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에서 확대적용을 요구한 자본분과는 대자본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잉여가치재분배기구로서의 하청제가 보편화되면 자본축적을 위한 방편으로서 소자본을 하청계열화하고 있는 대자본은 소자본에까지 산업재해정책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한 국가 경제의 재생산구조가 국제분업구조상 저위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적 종속하에 있으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노동통제정책을 통하여 임금 및 작업조건의 개선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통제정책은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온존시켜 산업재해 발생을

102) 각 국의 경우에 대체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입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은 자본의 축적기반인 저임금 구조의 온존을 가져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지만 그 통제정책으로 말미암은 산업재해 발생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과 노사간의 갈등 및 안정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위협 등을 초래하여 자본의 장기적인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상쇄기키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요약하면 자본의 장기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의 산업재해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의 정도는 자본주의 체제내화의 대상인 노동운동의 발전 정도 및 해당국가의 재생산구조의 특징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전략은 벌금이나 처벌과 같은 제재로 특정한 행동의 비용을 높이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위신의 손상과 오명 등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이용하여 확보하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의도하는 변화가 불연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쉽게 탐지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전략이다.¹⁰³⁾

규제전략은 정부의 개입전략으로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규제는 법률이나 지침 등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간에 확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많은 비능률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규제대상자들은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순응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독이 필요하다. 또 규제를 회피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인 최소한의 기준만 이행하는데 그 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대상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차별효과를 주기도 한다.¹⁰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전략은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3) 조탁, 전계논문, p.74.

104) Balch, *op.cit*, pp.56~60.

벌금이나 사법적 재제를 가하는 기준설정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설정방식은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규제기관이 각종의 안전 보건 기준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사회적으로 걱정수준 이상의 각종 정보의 제공과 기술지도 및 산재예방의식향상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그 효과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활동들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규제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53년 5월 10일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 시작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준수할 사항을 제64조로부터 제 73조까지 열거하였다. 그 중 중요 내용은 위험기계의 안전장치, 유해물의 종류, 근로자의 안전위생교육,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본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54년 4월 6일에 동 법 제72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에 관한 예규를 시달하였는데 그 중요골자는 첫째 근로자 150인 이상을 사용하거나 원동기 100마력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보건관리자 배치에 있어서는 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사용 규모에 따라 의사인 보건관리자와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배치 인원을 정하였으며 둘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건관리자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였다.¹⁰⁵⁾

1957년 3월 16일에는 예규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제정하였는데

105) 김종배, 전계논문, pp.146~153.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업장 보건관리 상황보고서와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보고서의 두가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직후의 안전보건산업은 부수 법령인 근로안전관리 규칙과 근로보건관리 규정이 제정 시행되지 않아 그 중요부분을 예규로서 시행해 왔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취업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및 새로운 공법의 사용 등에 의해 산업재해가 대형화하고 빈발해지며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2000년에 68,976명이었던 총 재해자수가 2004년에는 88,874명으로 거의 29% 가까이 증가했다. 물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체수의 증대에 따라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피해근로자의 절대적 규모가 매우 커졌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의 기본법이므로 고용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규제사항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위험한 기계 기구의 설계나 배치, 사용상의 문제점이나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항만하역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재해방지문제, 보호장비의 근원적 규제, 유해물질에 관한 기술적 대책 등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기술의 개발과 전문단체의 육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의 재해예방을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규제할 독립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¹⁰⁶⁾

106) 선진국에서는 건강문제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도의 노동통제로 인해 조직적인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재의 객관적 현실로 인한 갈등의 사전예방적 측면과 정통성이 취약한 제5공화국 정부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ILO가입조건에의 충족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참여가 봉쇄된 채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내용이 허구화되었다는 재야 노동계측의 주장도 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노동자건강의 사회적 보장』 (서울 : 한울출판사,

이에 따라 1981년 산업안전법이 제정되었는데 산업안전법은 1981년 11월 19일 제안되고 12월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근로기준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⁷⁾

첫째, 사업주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보건업무의 책임자로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용자 개념은 광범위하고 상대적이어서 사업주 이외에 회사의 사장이나 공장장 또는 현장의 작업주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책임이 쉽사리 말단의 관리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사업주자체를 책임주체로 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여¹⁰⁸⁾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이 되고 주식회사 등에서는 법인인 회사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의 확보에 있는 것과는 상이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만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일정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규정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⁹⁾

셋째,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기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

1990), pp. 25~48.

107) 김수복, 『산업안전보건법』, 서울 : 박문각, 1987, pp.61~69.

10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109) 동법 제13조 ~ 제19조.

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등이 없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위험한 기계가 공장이나 작업장에 설치되기 이전 설계나 제조과정에서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위험한 기계에 규격을 만들고 또 안전장치의 구비를 의무화함과 아울러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변경 또는 설치에 행정관청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고 인가를 필요로 하는 기계 등은 근로안전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다.¹¹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나 기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나 대여의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넷째, 유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황린성냥 기타 보건상의 유해물을 제조나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유해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황린성냥 이외에 해당되는 유해물이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황린성냥 이외에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였다.¹¹¹⁾ 그 외에 벤젠과 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과 성분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²⁾

110) 동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111) 동법 제37조, 제38조.

다섯째,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였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에서는 위험이 많은 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져서 동일한 작업장에 수차의 도급관계가 형성되고 각각 사용자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말단의 영세 수급인에게 일임시켜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으로서는 말단의 수급인 밑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의무를 부담시키기는 곤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중 건설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¹¹³⁾

여섯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외에도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¹¹⁴⁾

일곱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구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구의 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일정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이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판매나 대

112) 동법 제39조.

113) 동법 제18조.

114) 동법 제31조, 제32조.

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¹¹⁵⁾

여덟째,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규정을 확충하였다.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건강진단과 질병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규정이 설정되었으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등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사업주에 권하고 있다.¹¹⁶⁾

아홉째,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신설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이나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제도의 실효를 올리기 위해 안전보건진단제도도 법정화 되었다.¹¹⁷⁾

열 번째, 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조정 및 지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 유해 또는 위험한 장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기준의 작성 및 지도 감독, 안전보장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이다.¹¹⁸⁾ 이외에도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해야 하며¹¹⁹⁾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¹²⁰⁾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종래의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

115) 동법 제35조.

116) 동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117) 동법 제49조. 제50조.

118) 동법 제4조.

119) 동법 제8조.

120) 동법 제7조.

고 계획적인 대책으로서 위험방지기준과 사업장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의 촉진, 위험한 기계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 및 유통단계의 규제강화, 직접의 근로관계에 없는 중층하도급 등의 특수한 근로관계에 대한 규제의 정비, 건강관리의 충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제도, 국가의 원조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안전보건시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¹²¹⁾

1980년대 말에 발생한 여러가지 산업재해나 직업병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노동부는 1988년 7월 산업안전보건 장단기대책을 발표하고 1989년 1월에는 산업안전과를 산업안전국으로 승격했으며 더 나아가 199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안전 규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 하였다. '9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집행되어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완화압력은 산업안전보건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증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규제의 완화, 작은 정부의 표방 등의 이유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993년 5월 18일 노동부와 관련 공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특별조치법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중에서 법정고용인제도를 중점적으로 완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경우 여러 법정고용인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²⁾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의무고용이 불필요한 중복고용을 가져오므로 유사한 업종을 겸직시킴으로써 그 수를 줄이거나 면제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다.¹²³⁾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집행기관의 내부지침 등으로 그 효

121) 김수복, 전제서, p.76.

122) 산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8개법에서 11개분야에 대한 유자격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123) 예를 들면 규제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호환성을 인정하여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고용을 피하여 기업의

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다.¹²⁴⁾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정고용완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하였고 둘째 가스, 전기, 소방 등 개별적 위험업무를 다루는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산업안전관리자는 고용하되 그가 다른 개별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하였다. 또한 산업안전관리업무의 위탁범위를 확장하여 당시 “2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던 위탁범위를 특별조치법에서는 “중소업체”로 더욱 확장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과정 속에서 정부는 ‘97년 5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재개정으로 안전·보건관련 규제가 다시 한번 대폭 축소되었다.¹²⁵⁾ 이러한 규제완화조치는 사업장내 산업안전관리체제의 후퇴를 야기했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124) 이러한 경향을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서 사회규제의 풍선효과라고 한다. 즉 외부의 규제완화압력이 규제기관에 가해지면 규제기관은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시키기 때문에 규제수준은 규제완화 이전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노동부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완화를 내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를 여타 시설물안전관리자가 대행하는 가스나 위험물취급 등 특수업체에 대해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산업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비위험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산재취약업체 발견시 안전관리자 증원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각종 사업장의 지도 감독시 유해·위험물질이나 시설에 대해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전 안정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가 완화된 만큼 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사업장 외부의 안전관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등이다. 노동부, “규제완화이후 안전보건수준 저하를 막기 위한 향후대책”, 1993년도 국정감사자료.

125) 1997년 5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재개정으로 안전·보건관련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대기업과 그의 협력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작업장내에 협

고 '98년 초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 노동관서의 산업안전과 및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의 인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사업장 산업안전관리 관련 감시·감독기능을 약화시켰다.

력업체가 입주해 함께 작업하고 있고 대기업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만 안전관리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련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자도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5항, 제 14조 별표4 11항 12항 참조.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변수정의 및 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을 위한 도입의지가 도입 후 기대되는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회계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성과측정 모델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효과추정 요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2) 산업안전담당자의 전문성,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3가지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SC 성과를 토대로 (1) 재무적 성과, (2) 고객 성과, (3) 내부프로세스 성과, (4) 학습 및 성장성과의 4가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1. 독립변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가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특히 현재 투자와 예산규모의 적절성,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의 변수는 J. V. Grimaldi(19

94), M. Bertrand(1991), R. B. Black(1995), 조경동(1987), 김우수(1993), 형광석(1992), 박명수(1993) 등의 연구에서 측정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교육에 대한 관심,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의 풍부, 안전전문화 교육의 적극적 참여도 등 산업안전예방과 관련된 변수들은 P. Lanoie와 S. Tavenas(1996), S. Spilling과 J. Eitheim(1986), 김병석(1997), 박해천(1992), 박영호(1989) 이영순(1999) 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예방요인들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립변수들의 세부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의지와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 현재 투자와 예산규모의 적절성, (2)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3) 최고경영자의 관심, (4) 산업안전담당자의 관심, (5) 투자유도를 위한 필요성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이는 기업이 산업안전 관리자의 전문성과 기술수준과 교육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관리자의 (1) 새로운 정보와 교육에 대한 관심, (2)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의 풍부, (3) 교육적 능력의 풍부, (4) 안전전문화 교육의 적극적 참여도, (5) 전문가 기술수준 여부 등을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본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 별도의 계정과목의 분류, 관리 및 통제, (2)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3)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4) 조세

지원, (5)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방안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표 2] 독립변수 및 측정항목

독립변수	측정항목
A. 산업안전보건회계 제도에 대한 관심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투자와 예산 규모의 적절성 2.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3. 최고경영자의 관심 4. 산업안전담당자의 관심 5. 투자유도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B.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정보와 교육에 대한 관심 2.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의 풍부 3. 교육적 능력의 풍부 4. 안전 전문화 교육의 적극적 참여 5. 전문가 기술수준의 관리자
C.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도의 계정과목의 분류, 관리 및 통제 2.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3.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4. 조세지원 5.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2. 종속변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SC방법론을 통하여 네 가지 성과별로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BSC를 통한 경영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성과측정시스템으로서 BSC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기업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현재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한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 기업의 성과는 주로 결과 측면인 재무성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재무적인 측정지표에 근거한 성과측정은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최적화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부서의 성과를 최적화하는 오류를 범하여 왔다.

전통적인 재무지표는 기업의 과거를 나타내 주는 성과지표로 단기적이며 과거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올바르게 예측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기업의 운영 상황과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재무 정보만 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균형 잡힌 성과측정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성과측정시스템에는 이윤, 수익성, 주주가치 등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공급자와의 제휴,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 지적 자산, 기업의 학습 및 성장 능력 등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성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고 모니터하며,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성과측정은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과 맞물려 다양한 측면에

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성과측정에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과측정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적자원, 품질, 고객 만족 등의 비재무적인 지표들을 재무적인 지표와 더불어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BSC는 조직의 사명과 전략들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들의 집합으로 바꾸어주는 하나의 틀이다. BSC는 투하자본 수익률과 같은 과거의 재무측정지표들을 포함하면서 과거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측정지표를 추가해서 미래 성과를 창출하는 측정지표를 제공한다.

BSC는 Kaplan과 Norton이 제시한 네 가지 성과에 따라 조직전략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회사구성원들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 고객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할 것인지, 미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람과 시스템, 절차에 대한 투자와 내부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조합해야 하는지를 측정케 해준다.

BSC는 재무적 성과로 단기적인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재무적, 경쟁적 성과를 이룰 가치동인(value driver)을 명확하게 규명해준다. 과거 재무회계 모형은 물리적 자산이나 유형자산 관리에 탁월한 기능으로 수백년간 회사전반의 관리시스템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보시대에서는 무형자산과 비 물리적인 요소의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1) 재무적(Financial) 성과

사업단위들은 BSC 구축과정을 통해 기업전략을 자신의 재무적 목표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무적 목표들은 성과측정기록표에 있는 다른 시각에서 도출된 목표들과 측정 지표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성과측정기록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재무적 목표에서 출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제적인 성과를 전달하기 위해 재무적 프로세스와 고객,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원 및 시스템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전략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재무적 목표와 측정지표는 전략으로부터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를 규정하고, 균형성과표의 4가지 성과의 목표와 측정 지표에 근거해서 이를 모두 목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적 목표는 사업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맞춰, 전략적인 목표와도 부합되게 설정해야 한다. 즉, 성장단계, 유지단계, 수확단계에 대응되는 재무적인 목표를 세워 성과측정을 해야 한다.

2) 고객(Customer) 성과

BSC의 고객성과에서는 기업이 경쟁하기로 선택한 고객과 세분시장을 파악한다. 세분시장은 기업의 재무적 목표에서 수입원천을 나타내며, 고객성과는 만족도, 충성도, 확보율, 유지율, 수익성 등 핵심적 고객 성과측정지표를 목적으로 삼은 고객과 세분시장에 맞게 정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목표고객과 세분시장에 전달할 가치명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단위 관리자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도 BSC의 고객성과에서 사명선언문과 전략선언문을 구체적인 시장 및 고객중심의 목표로 전환시켜야 한다.

3)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성과

관리자들은 고객과 주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인가를 밝혀내야 한다. 관리자들은 내부 프로세스 가치사슬을 구체화해야 한다. 가치사슬은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혁신 프로세스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사슬은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운영 프로세스로, 나아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고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후서비스로 이어진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과에서, 관리자는 주주와 목표고객 세분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탁월한 주요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전통적인 성과측정 시스템은 단지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원가, 품질, 시간 측정지표를 통제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BSC 접근방법은 내부 프로세스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개별적인 외부 고객의 기대로부터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학습 및 성장(*Learning & Growth*) 성과

궁극적으로 채무, 고객,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의도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힘은 조직의 학습과 성장 역량에 달려있다. 학습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원천은 직원과 시스템 및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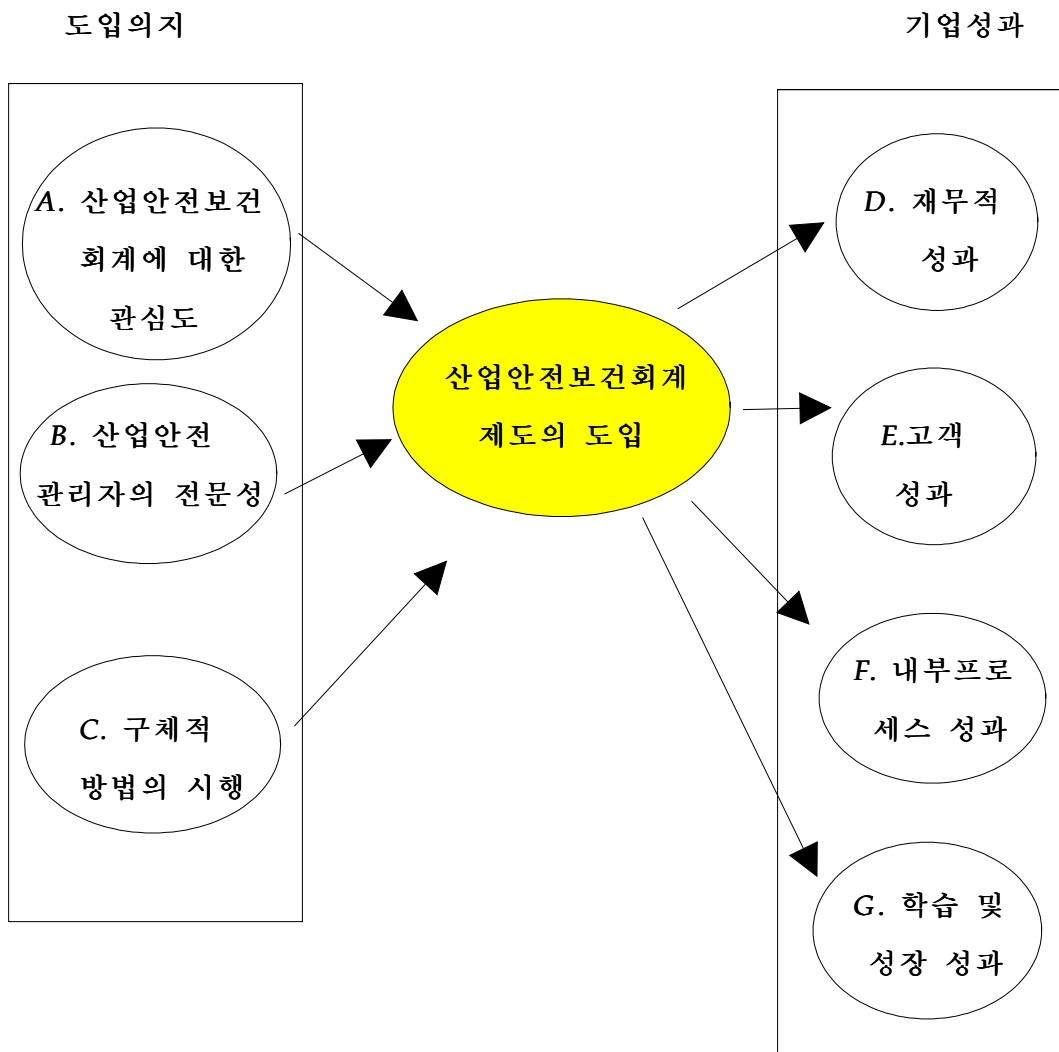
[표 3] 종속변수 및 측정항목

독립변수	측정항목
D. 재무적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성 향상 2. 생산성 향상 3. 유동성 향상 4. 영업이익의 증가 5. 영업비용의 절감
E. 고객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문처리시간의 단축 2. 고객만족의 증가 3. 공사기간의 단축 4. 시장점유율의 증가 5. 고객충성도의 증가
F. 내부프로세스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 등의 혁신 증가 2.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3. 리드타임의 단축 4. 원자재의 낭비율 감소 5.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증가
G. 학습 및 성장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업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2. 종업원의 산업안전 의식의 향상 3. 종업원의 생산성의 증가 4. 종업원의 이직율 감소 5.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기업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를 BSC 성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제2절 가설설정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5.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9.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절 자료수집

1.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총 문항수는 45문항이며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응답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항이 10문항이며, 설문지의 첫부분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의지에 대한 결정요인을 묻고자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이 5문항,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항이 5문항,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과 관련된 질문이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에 관하여 5문항, 고객 성과에 관하여 5문항, 내부 프로세스 성과에 관하여 5문항, 학습 및 성장성과에 관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설문 항목은 각 문항의 번호를 각각 점수로 표시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2.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는 경인지역 소재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업성과를 연구하였다. 이는 기업 특성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의 업종선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 업종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재해 발생과 연관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단은 경인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과 방문, E-mail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총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와 응답자의 의도가 불분명한 설문지와 같은 분석자료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50부를 제외한 총 150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기업의 일반적 특성 분석 및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 둘째,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3) 셋째,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SPSS 10.0과 MS-Excel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의 해석

제1절 표본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경인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과 방문, E-mail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총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자료로서 부적절한 50부를 제외한 총 150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응한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 기업의 업종별 구성은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응답 기업의 법적 안전관리비의 규모는 5억 원 미만이 17%, 5억 ~ 10억 원이 45%, 10억 ~ 20억 원이 26%, 20억 원 이상이 1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직종은 모두 사무직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과장급 이상이 40%, 과장급 미만이 60%로 나타났으며, 직책은 모두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등 시설안전관리자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75%가 정규직으로 나머지 2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건설안전기사가 41%, 산업안전기사가 42%, 기타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이 17%로 나타났다.

제2절 측정항목의 통계분석

1. 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분석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한다. 즉, 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타당도의 평가방법에는 (1) 내용타당도, (2) 예측타당도, (3) 구성타당도가 있으며 구성타당도는 다시 다속성다측정 방법(*multitrate-multi method*), 논리적구성 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공통차원(*common underlying dimensions*)을 통하여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이다. 즉, 서로 상이한 개념들에 대한 측정항목을 개발한 후에 측정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적재)내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요인들 간에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각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요인 내의 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유지하고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인분석의 방법에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or ordinary factor analysis*)과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어떤 요인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할 때 주로 실시하며 사후적으로 요인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확증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정해진 요인과 측정항목들에 대해 해당 측정항목들이 측정하려는 요인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는가를 검증해 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의 타당도(validity of measurement)를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개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5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출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eigenvalue가 1 이상,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0.5 이상인 값을 요인으로 추출하도록 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행렬(factor matrix)의 열(column)의 분산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구조를 가장 단순화 할 수 있고, 해석이 가장 용이한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요인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처음 설문 문항 중에서 공통성 척도에 의하여 설명력이 높은 eigenvalue가 1 이상,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 요인별로 다음의 3개 항목씩으로 재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변수를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 값이 얻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즉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수록 그 척도(측정치)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뢰도의 측정방법에는 (1) 반복측정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2)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3) 문항분석(item-total correlation), (4) 알파계수

(cronbach's coefficient alpha), (5) 대안항목 신뢰도(alternative form reliability), (6)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의한 알파계수 측정방법이다. 내적 일관성은 하나의 construct를 다항목(multi-item)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consistency) 혹은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 내적 일관성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Cronbach's α 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항목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항목 척도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coefficient alpha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5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별 신뢰도의 측정기준인 Cronbach's α 값이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0.619,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0.531,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0.781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4) 재무 성과는 .775, (5) 고객 성과는 .700, (6) 내부프로세스 성과는 .746, (7) 학습 및 성장 성과는 .698로 역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독립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분석결과

변수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α 값
산업안전 보건회계 제도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811			.619
	투자유도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792			
	최고경영자의 관심	.775			
산업안전 관리자의 전문성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834		.531
	교육적 능력		.784		
	전문가 기술수준의 관리자		.675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 시행	별도 계정과목의 분류 및 관리			.908	.781
	안전보건원가명세서 공시			.802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801	
고유치		1.475	1.403	1.706	
설명분산(%)		49.150	46.783	56.879	
누적분산(%)		100	100	100	

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식 : VARIMAX

[표 5] 종속변수의 타당성(*validity*)타당성과 신뢰성(*reliability*) 분석결과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i>a</i> 값
재무 성과	영업이익의 증가	.735				.775
	유동성의 향상	.722				
	생산성의 향상	.715				
고객 성과	공사기간의 단축		.789			.700
	고객만족의 증가		.731			
	고객충성도의 증가		.714			
내부 프로세스 성과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			.802		.746
	결합률과 재작업률 감소			.738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증가			.700		
학습 및 성장 성과	종업원의 생산성의 증가				.776	.698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737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732	
고유치		1.910	2.032	1.903	1.752	
설명분산(%)		63.683	67.733	63.422	58.394	
누적분산(%)		100	100	100	100	

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식 : VARIMAX

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변수들 간의 관계는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성의 강도와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는 (1) 상관계수 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과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과 예측을 위한 (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 있다.

회귀분석은 한 변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그리고 다른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를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라고 한다.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은 논리적 타당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리적 근거 없이 어떤 임의의 두 변수 중 하나를 독립변수, 다른 하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두 변수 간에 독립, 종속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독립변수들과 4가지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의 변수들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표

변수명	제도도입 관심도	관리자의 전문성	구체적 방법시행	재무 성과	고객 성과	프로세스 성과	학습성장 성과
제도도입 관심도	1.000						
관리자의 전문성	0.173**	1.000					
구체적 방법시행	0.067	0.176**	1.000				
재무 성과	0.013	0.078	0.244**	1.000			
고객 성과	0.055	0.013	0.168**	0.256**	1.000		
프로세스 성과	0.052	0.074	0.213**	0.360**	0.367**	1.000	
학습성장 성과	0.121*	0.087	0.077	0.240**	0.394**	0.330**	1.000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제3절 가설검증 및 논의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관심도에 대한 효과

[표 7]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효과 가설검증 결과

A.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대한 관심도	t	p값	결과
가설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7	.805	기각
가설 2.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39	.299	기각
가설 3.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980	.328	기각
가설 4.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91	.023	채택

가설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805($p>0.05$)로 기각되었다. 즉,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 유동성 향상, 수익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설문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관심도의 요인들이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설정됨에 따라 계량적 지표인 유동성 향상, 수익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응답 기업들이 답을 함으로써 해석된다.

가설 2.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검증결과 유의도 0.299($p>0.05$)로 기각되었다. 즉,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응답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는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지만 역시 재무적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3.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검증결과 유의도 0.328($p>0.05$)로 기각되었다. 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내부 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 원자재의 낭비를 감소,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서 아직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향상을 통한 생산성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지만 내부프로세스로의 구축과 시행 후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도입 후 3~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그 도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4.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검증결과 유의도 0.023($p < 0.05$)로 채택되었다. 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의 학습 및 성장 성과에서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생산현장에서의 종업원의 직무와 근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생산현장에서 그 효과가 즉시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효과

[표 8]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효과 가설검증 결과

B.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t	p값	결과
가설 5.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76	.141	기각
가설 6.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0	.803	기각
가설 7.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94	.164	기각
가설 8.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39	.102	기각

가설 5.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는 검증결과 유의도 0.141($p>0.05$)으로 기각되었다. 즉,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역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향상, 수익성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등 전반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과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 구체적인 효과를 장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6.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은 검증결과 유의도 0.803($p>0.05$)으로 기각되었다. 즉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구

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도 산업안전관리 요원의 확보율이 낮고 전문성이 낮은 원인에 기인하며,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고객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과 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7.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은 검증결과 유의도 0.164($p>0.05$)로 기각되었다. 즉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연구개발 등의 혁신 증가, 원자재의 낭비를 감소,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 내부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독립된 권한을 위임받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부서의 존재,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담당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8.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은 검증결과 유의도 0.102($p>0.05$)로 기각되었다. 즉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종업원들의 교육수준,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인 산업안전관리자의 교육이나 관리지침 등에 크게 학습 및 성장성과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순한 산업안전이라는 요인이 종업원 근로조건, 특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시행에 대한 효과

[표 9]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효과 가설검증 결과

C.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t	p값	결과
가설 9.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714	.000	채택
가설 10.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06	.001	채택
가설 11.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083	.000	채택
가설 12.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53	.147	기각

가설 9.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000($p < 0.05$)로 채택되었다. 즉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의 중요 지표인 유동성의 향상, 수익성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등 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제도화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응답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다른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요인들보다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정책의 시행이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계량적 지표인 재무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0.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001($p < 0.05$)로 채택되었다. 즉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와 같은 요인은 재무제표 등의 회계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일반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그 사회적 기여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1.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000($p < 0.05$)로 채택되었다. 즉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 내부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 됨으로써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 원자재의 낭비를 감소,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을 통한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2.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147($p > 0.05$)로 기각되었다. 즉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 기

업의 산업안전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산업안전시스템의 미비하다는 점과 학습 및 성장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나 고객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들과 보다 유의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기대되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효과추정 요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2) 산업안전담당자의 전문성,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의 3가지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SC 성과를 토대로 (1) 재무적 성과, (2) 고객 성과, (3) 내부프로세스 성과, (4) 학습 및 성장성과의 4가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기업성과와의 가설검증은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와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으나, 학습 및 성장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검증되어 유일하게 채택되었다.

이는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 유동성 향상, 수익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지만 산업안전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설문 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관심도의 요인들이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설정됨에 따라 계량적 지표인 유동성 향상, 수익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응답 기업들이 답을 한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는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지만 역시 재무적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 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 원자재의 낭비를 감소,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서 아직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향상을 통한 생산성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지만 내부프로세스로의 구축과 시행 후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도입 후 3~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그 도입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업안전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의 학습 및 성장 성과에서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생산현장에서의 종업원의 직무와 근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

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생산현장에서 그 효과가 즉시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기업성과와의 가설 검증은 재무 성과, 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먼저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역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향상, 수익성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등 전반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과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그 구체적인 효과를 장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도 산업안전관리 요원의 확보율이 낮고 전문성이 낮은 원인에 기인하며,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고객성과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과 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 원자재의 낭비를 감소,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 내부 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

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독립된 권한을 위임받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부서의 존재,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담당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교육적 능력, 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종업원들의 교육수준,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인 산업안전관리자의 교육이나 관리지침 등에 크게 학습 및 성장성과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순한 산업안전이라는 요인이 종업원 근로조건, 특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과 기업성과와의 가설 검증은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으며, 학습 및 성장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먼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의 중요 지표인 유동성의 향상, 수익성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제도화 하기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응답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과 관련된 다른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요인들보다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정책의 시행이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계량적 지표인 재무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와 같은 요인은 재무제표 등의 회계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일반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그 사회적 기여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 내부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 됨으로써 연구개발 등의 혁신 증가, 원자재의 낭비를 감소, 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을 통한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종업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산업안전시스템의 미비하다는 점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보다는 재무적 성과나 고객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들과 보다 유의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서 일반화되지 않고 비교적 생소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대하여 그 도입의지와 기대되는 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초기 탐색적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기 연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한계점과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로서 이 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구체적인 설문 항목의 이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기업들 간, 응답자들 간의 특성을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등 이해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요인과 도입의지 및 기업성과 간의 보다 세부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 특성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업, 건축업, 토목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또는 산업별, 기업의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기업성과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이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환경회계 또는 산업재해, 안전보건 등의 분야들과 그 명확한 경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분석기법들을 원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렇게 유사한 분야들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이론적인 논거와 산업안전보건회계 분야의 독자적인 연구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했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무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를 토대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수현, “안전관리 요인과 효율성”,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도창, 『일체행정법(상)』, 서울 : 박영사, 2000.

김수복. 『산업안전보건법』, 서울 : 박문각, 1987.

김종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종석, 『한국정부규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김종석,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이규억 편.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김종석, 『경제규제와 경쟁정책(II) - 주요산업별 경쟁촉진 방안』. 이규억 편.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0.

김한주, 『한국사회보장론』, 제2개정판, 서울 : 법문사, 1985.

김형기,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 예속독점자본주의하 임노동의 이론과 현상 분석』, 서울 : 까치, 1988.

등본무, “노동재해의 역사 2-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노동과학연구소』, 48권 9호, 1972.

박해천, “생산관리적제요인이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주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박창길 외 2인 공역, 『사회경제회계』, 서울 : 법문사, 1999.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서울 : 풀빛, 2000.

송기호, “산업재해의 경제학적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이경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서울 : 창작사, 1986.

이근희,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 1989.

이승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1.

이승환,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제도개선에 관한연구”, 명지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임웅석, “한국의 산재보험과 재해예방관리 및 대책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조탁, “산업안전 보건규제정책의 정부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6.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노동과 건강연구회, 『노동자건강의 사회적 보장』, 서울 : 한울출판사, 1990.

동녘 편집부 편, 『산업재해의 인식』, 서울 : 동녘, 1985.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법 개정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산업안전공단, 1989.12.

2. 국외문헌

Bird, Jr., F. E. and Robert G. Loftus, Loss Control Management, Institute Press, Advision of International Loss Control Institue, 1989

Carl F. Cranor, 1990, "Some Moral Issues in Risk Assessment", Ethics 101(October), 1993, Refulating Toxic Substances : A Philosophy of Science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ess.

Colling, D. A.,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nd Technlolgy

Craig A. Olsom. "An Analysis of Wage Differentials REceived by Workers on Dangerous Jab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6 No.2 (1981)

Daniel F. Spulber, Refulation and Markets (The MIT Press, 1989)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0.

Epstein, R. A., 1973, "A Theory of Strict Liability" , Journal of Legal Studies 2.

Fletcher, G., 1972, "Fairness and Utlity in Tort Theory", Harvard Law Review 69.

Greer,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Guido Calabresi, *The Costs of Accid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Hart, H. L. A., *The Concept of La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Quoted from Brigham and Brown.

Heincich, H. W. and Dan Peterson and Nestor Roo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 McGraw-Hill Book Co., 1980.

Henry W. Spiegel, 1983,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Kelman Steven, "Regulation and Paternalism," *public Policy*, Vol. 29 No.2 (Spring 1981)

Kenneth J Meier, *Regulation.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Mark V. Pauly and Thomas D. Willet, "Two Concepts of Equ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in Amacher. Tollison and Willet (eds). *The Economic Approach to Public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Max Neiman, "The Virtues of Heavy-Handedness in Government." in
Brigham and Brown.

Morrison Alan B. and Roger G. Noll,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s in the Eighties : A Panel Repor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1980)

Okun Arthur M. Equality and Efficiency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etersen, D., Human-Error Reducation and Safety Management, Aloray
Publisher Inc., 1984.

Richard A. Posner, 1972, A Theory of Neglig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

Viscusi, Emploment Hazard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William Lilley and James C. Miller, "The New Social Regulation," Public
Inetrest, No. 47.(Spring 1977)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Budget for Fiscal Year 1993,
692.

[설문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를 실증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며 귀하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문적 연구만을 위해 사용 됩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 수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약분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임 정 용

H.P : 011-380-3099

E-mail : jylim@dwconst.co.kr

Part I . 다음은 귀사 및 귀하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01. 귀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형태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명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총계	명	명	명	명

02. 다음 중 귀사가 속한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음식료품 (2) 의복섬유 (3) 기계금속 (4) 전기, 전자 (5) 금융 및 보험
 (6) 건설업, 건축, 토목 (7) 화학 및 화공 (8) 생명과학 (9) 정보통신 IT 관련업
 (10) 교육 서비스업 (11) 요업 (12) 환경 (13) 기타()

03. 귀사의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04. 귀사의 지난 회계년도(2004년말)의 자산총액은 얼마입니까?

05. 귀사의 지난 회계년도(2004년 기간동안)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06. 귀사의 법적 안전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1) 5억원 미만 (2) 5-10억원 (3) 10-20억원 (4) 20억원 이상

07. 귀하의 직급과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급() 직책()

08. 귀하의 직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사무직() (2) 생산직 ()

09.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정규직() (2) 비정규직 ()

10.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 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1) 건설안전기사 (2) 산업안전기사
 (3) 산업안전관련과 졸업 (4) 기타 ()

Part II. 다음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A. 다음은 귀사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회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와 예산의 규모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 관리비와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에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회사의 산업안전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B. 다음은 귀사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새로운 정보 및 전문화 교육에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자로서의 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대화, 발표 및 설득 등의 교육적 능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안전 전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전문가 기술수준의 차장이상 관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산업안전보건회계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기업 내부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및 통제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안전보건원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보건원가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회사의 산재보험료와 연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II. 다음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대되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D. 다음은 재무적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도입 후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도입 후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도입 후 유동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도입 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도입 후 영업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 다음은 고객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도입 후 주문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도입 후 고객만족도가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도입 후 공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도입 후 시장점유율이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도입 후 고객충성도가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F. 다음은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도입 후 연구개발 등의 혁신이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도입 후 결함률, 재작업률이 감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도입 후 업무의 리드타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도입 후 원자재의 낭비율이 감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도입 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G. 다음은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도입 후 업무에 대한 종업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도입 후 종업원의 산업안전 의식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도입 후 종업원의 생산성이 증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4. 도입 후 종업원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도입 후 산업재해의 감소로 인한 조직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